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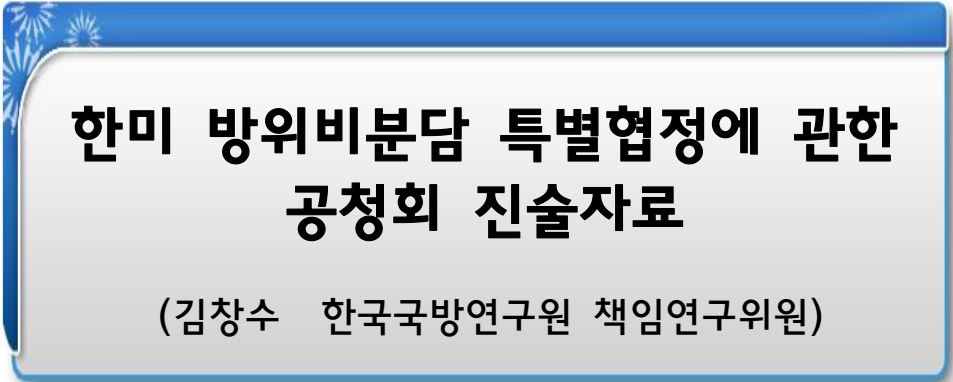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공청회

2014. 2. 21(금) 14:3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목 차 ●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공청회 진술자료 1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방위비분담금 공청회 진술자료 17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용 방향 31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교수)
- 국회는 8차 협정보다 개악된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해야 55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국문제팀장)
- 참고자료 95
 -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공청회 진술자료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공청회 진술자료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 개요: 주요 쟁점

○쟁점 1 : 총액 9200억, 유효기간 5년의 타당성 여부

☞ 미측 요구 대비 우리의 재정 여건 등 고려 2014년 분담금 총액 9200억 원이라는 합리적 수준 합의, 추가 협상에 따른 부담 우려 유효기간 5년 합의

○쟁점 2 : SMA 자금의 LPP 사용 문제

☞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일부가 LPP 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지난 13년간 양해해 왔음. LPP가 3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되돌리는 것은 국책사업인 기지이전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지자체의 정책 추진에도 큰 혼선을 가져오므로 결과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

○쟁점 3 : 미집행액(미사용액) 처리 방안

☞ 미집행액 대부분은 기지이전 사업 지연 및 다년도 소요 건설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향후 기지이전 사업의 진행에 따라 소진 예상

○쟁점 4 : 미집행액의 이자 발생 문제

☞ Community Bank(BOA)의 방위비분담금 예치 구좌에서 이자 발생, 미

국방부나 주한미군사는 이자 소득을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세무 당국에서 검토 중

○쟁점 5 : 제도개선 관련 문제

☞ 한미 간 합의한 강화된 협의 절차를 통해 제도개선의 실효성 보장

○결론 및 제언 : 투명성 및 책임성의 강화가 예상되지만 지속적으로 개선할 과제도 식별되었음.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성숙한 한미동맹과 미래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방위비분담 협정의 신속한 비준이 필요

□ 쟁점 1: 총액 및 유효기간

① 총액 산출의 근거

- 금번 협상시 미측은 주한미군 군사적 소요에 근거하여 1조 이상 요구,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감안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
 - 미측의 1조원 이상 대폭 인상 요구에 대해, 치열하게 협상한 결과,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의 인상률(5.8%) 수준에서 합의
 - '05년 삭감은 주한미군 대규모 감축(약 1만명)에 따른 것이며, '07년 제7차 협정시에는 6.6% 인상
- (9,200억원의 항목별 구체적 내역) 미측 요구 총액이 삭감된 만큼 특별협정 발효 후 45일 내에 한·미간 검토와 평가를 거쳐 구체적인 최종배정액을 결정할 예정
- ('총액형' 체제 유지, '소요형' 장점을 접목) 급격한 총액 인상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총액형'이 유리하지만, 투명성이 장점인 '소요형'도 고

려하여 절충형 합의 도출

- ‘총액형’ 체제에서는 협정기간 동안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인상폭이 억제되므로, **총액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
- ‘소요형’ 체제에서 미측이 군사적 소요에 근거 대폭 증액된 총액 요구시 북한의 직접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는 이를 거부하기 힘들 것

☞ ‘총액형’ 체제 유지 하, ‘소요형’의 장점인 투명성 확보위해 노력

통계표	1인당 GNI	환율	방위비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국방비	GDP대비 국방비
단위	달러	대달러원	억원	억달러	억원	억달러	%
1991	7,276.00	760.80	1073	1.41	74,764	98.2702	3.23
1992	7,714.00	788.40	1305	1.66	84,100	106.6717	3.19
1993	8,402.00	808.10	1694	2.10	92,154	114.0379	3.08
1994	9,727.00	788.70	2080	2.64	100,753	127.7457	2.88
1995	11,735.00	774.70	2400	3.10	110,743	142.9495	2.70
1996	12,518.00	844.20	2475	2.93	122,434	145.0296	2.66
1997	11,505.00	1,695.00	2904	1.71	137,865	81.3362	2.72
1998	7,607.00	1,204.00	4082	3.39	138,000	114.6179	2.75
1999	9,778.00	1,138.00	4411	3.88	137,490	120.8172	2.50
2000	11,292.00	1,264.50	4684	3.70	144,774	114.4911	2.30
2001	10,631.00	1,313.50	4882	3.72	153,884	117.1557	2.36
2002	12,100.00	1,186.20	6132	5.17	163,640	137.9531	2.27
2003	13,460.00	1,192.60	6686	5.61	175,148	146.8623	2.28
2004	15,082.00	1,035.10	7469	7.22	189,412	182.9891	2.29
2005	17,531.00	1,011.60	6804	6.73	211,026	208.6062	2.44
2006	19,691.00	929.80	6804	7.32	225,129	242.1263	2.48
2007	21,632.00	936.10	7255	7.75	244,972	261.6943	2.51
2008	19,161.00	1,259.50	7415	5.89	266,490	211.5840	2.60
2009	17,041.00	1,164.50	7600	6.53	289,803	248.8647	2.72
2010	20,562.00	1,134.80	7904	6.97	295,627	260.5102	2.52
2011	22,451.00	1,151.80	8125	7.05	314,031	272.6437	2.54
2012	22,708.00	1,070.60	8361	7.81	329,576	307.8423	2.52
2013		1,055.40	8695	8.24	343,453	325.4200	2.53
2014			9200		357,056		

※출처 : 1인당 GNI와 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제시스템; 국방비와 GDP 대비 국방비(%)는 「2012국방백서」 일반부록 16. 연도별 국방비 현황(323쪽).

② 기타 동맹현안 (전작권 전환, MD, 미군전략자산 전개 등)과의 연계성

- 방위비분담협상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것으로 기타 한미동맹의 현안들과는 직접 관련 없음

③ ‘14년 합의액 9,200억원 대비 편성액 7,997억원 관련

- 부족시 국방부 타 예산 집행잔액 활용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산편성액 대비 25%는 잘못(7,360억원→9,200억원), 합의액과 실제 예산 편성액의 개념이 다르므로 두 숫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현물사업 실제 예산 편성·운용 〉

- 주한미군사는 합의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총 사업비 기준으로 자금 배정액 결정, 국방부에 제출
- 국방부는 다년도가 소요되는 현물사업 특성상 “과거 발주된 계약집행을 위한 연차별 지출액 + 당해연도 요청된 신규사업의 첫해년도 지출액” 만큼 예산 편성
- 신규사업 첫해년도에는 총 사업비 대비 실제 지출액이 낮다는 점 등 고려시 실제 운용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평가

④ 유효기간 (5년) 근거

- 예산 수립·운영의 예측 가능성 제고, 동맹국간 빈번한 분담금 협상에 따른 부담 등 종합적으로 고려

- * 미국 국방부의 미래국방기획(FYDP)은 5년을 단위
- * 일본의 경우, 현행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11-2015의 5년
- 특히, 미 국방 예산이 향후 10년간 지속 삭감 예정 감안시 자동삭감(sequestration 발동) 협상을 자주하는 것은 총액 측면에서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 91년 이래 매 협상시마다 총액 증가, 단 한번(2005년, 주한미군 대폭 감축)만 예외

□ 쟁점 2: SMA 자금의 LPP 사용 문제

① 진행 경과

-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업 사용은 LPP 협의 초기(2001년)부터 정부가 미측에 양해해 준 사항
 - SMA 자금의 LPP 사용은 과거 세 번의 정부를 거치는 동안 양해해 온 사안 ('02년 LPP 협정 체결, '04년 LPP 협정 개정)
 - LPP가 3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13년간 이어져 온 양해 사안의 법적 효력 시비는 무의미
 - LPP 문제는 '09년 제8차 협정 시 크게 논란이 되어 공청회 등을 거쳤고, 여야 합의로 비준 동의를 받음.

② 앞으로도 계속 사용 허용 여부, 사용 불허 필요성 등

- 10년 이상 지속된 양해사항을 사업 막바지에 되돌리는 것은 국책사업인 기지이전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지자체의 개발사업(공원 조성, 대학 유지 등) 추진에도 큰 혼선을 가져오므로 결과

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

- 금번 제도개선에 따라 향후 국회가 주한미군측의 건설사업목록과 사업 설명서를 투명하게 알게 될 것으로 기대

□ 쟁점 3: 미집행액(미사용액) 처리 방안

① 발생 원인

- “미집행액” 1.3조원이란, “미측이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 현금”
약 7,100억 + “이월·불용(’09~’13)·감액편성액(’11~’13)” 약 5,500억
- (미측 보유 미집행 현금) ‘09년 이전 군사건설비 전액 현금 지급시 발생, 기지이전사업 지연 및 다년도가 소요되는 건설사업 특성 등으로 미집행 현금 축적
 - * 부지매입·시설종합계획·부지조성공사 지연 등 사유로 기지이전 사업 지연
- (이월·불용·감액편성) 군사건설비 현물 전환 이후 주로 발생
 - (이월액) 국방부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각종 사유로 당해 연도 배정 예산 미집행
 - (불용액) 재 이월 및 집행 잔액에 따른 불용액 발생
 - (감액편성액) 예산집행을 향상을 위해 미측과 협의 하에 ‘11~’13년간 3,035억원 감액편성
 - * 추후 우리 재정부담 능력 등을 감안, 미측과 합의 하 집행 가능한 시점에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 예정 (즉 유보적 성격의 분담금)

② 현금 대 현물 비율

- 금번 협상시 정부는 5년 전 합의된 「군사건설 현물지원 교환각서」 상 현금 對 현물 지원 비율(12%:88%) 등 9개 원칙을 그대로 승계하는 「군사건설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안」 채택
 - 건설 사업은 ‘설계와 시공감리’와 ‘시공’(건설)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설계와 시공감리’는 미측이 시행하고(현금 지원, 12%), ‘시공’(건설)은 우리측이 시행(현물 지원, 12%를 제외한 88%)
- 따라서, 설계·감리비 12퍼센트(현금지급)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라 전부 현물로 지원되므로 현물지원분은 5년 전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88%가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 5년 전 교환각서는 9개 원칙 이외 연도별 현물 전환 비율을 기술(즉, 2009년 30%, 2010년 60%, 2011년부터 88%), 이는 새로운 현물 지원 제도 도입에 따른 **경과규정**임
 - 현물 지원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는 효과를 기대

③ 향후 집행 전망

- 미측이 보유한 **미집행 현금**(1조 1,193억원 (‘08년말) → 현재 약 7,100억원 (’13. 8월말))은 미측 내부적으로는 사용처가 계획되어 있는 자금
 - 2016년 기지이전사업 완료를 목표로 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수년 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
- **이월·불용·감액편성액** 중 특히 **군사건설의 경우**, 발주된 시설물 완공을 위해 공사(정비·보급·병영·작전 시설 등 관련 40여건)의 진도에 따라 연차별로 집행하고, 기지이전사업 완료시(’16년)까지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 또한 향후 개선된 제도에 따라 한미 간 협의·조정을 통해 집행 부진의 문제 해소 가능

- 이른 바 “미집행액” 약1.3조원은 방위비 분담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건설 사업이 지연되어 발생(부지조성 지연 등 각종 사유)

□ 쟁점 4 : 미집행액의 이자 발생 문제

① 방위비분담금 예치에 따른 이자 발생 여부 및 사용처

- 예금주인 주한미군사와 미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예치에 따른 이자 소득을 일체 얻은 바 없다는 입장
- 방위비분담금 예치금 이자 발생과 Community Bank(CB)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 확인
- CB는 방위비분담금 예치를 통해 이자 소득을 얻은 바 있지만 이는 은행으로서의 관행적 활동에 해당

② CB의 이자 수익 고려, 동 자금 회수 또는 삭감조치

- 정부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정상적인 예산편성 및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현금 지급분을 미측에 지급
 - 우리 정부가 이미 미측에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을 회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양국간 신뢰문제 발생 여지
 - 미 정부는 CB가 발생시킨 이자수익 중 일부라도 취한 바 없고 과세는 한국 관계당국이 CB와 처리할 문제라는 입장

- CB의 이자수익에 대해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지는 우리 정부가 국익 차원에서 엄정하게 검토할 필요
- 주한미군 또는 미 정부가 직접 이자수익을 일체 얻은 바 없다고 확인한 이상, 이자수익 환수 등에 대해 우리 측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

③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

- 세무당국에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측은 과거 현금 미집행액이 무이자 계좌에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만 언급했으나, 야당과 언론의 문제 제기에 따라 금번 협상시 우리 정부가 동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였고, 그 결과 미측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과 해명을 받았다고 함
 - *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 발생은 '09년 현물 지원 체제 전환 이전, 주한미군 건설 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던 시기에 누적된 현금 미집행액으로부터 기인

□ 쟁점 5 : 제도개선 관련 문제

① 제도개선 내용: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분담금 배정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 강화
 - 항목별 배정액을 결정할 때 항목별 소요 근거에 기반하여 한미 양측이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 시행
 - 정부 예산편성 일정 고려, 항목별 배정액 결정 시점을 조정
 - * 잠정배정 : 4월 말 → 3월 15일, 최종배정 : 9월 말 → 8월 말

○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

- 국방부와 주한미군사측 고위급 인사로 ‘합동협조단’ 구성
- 미측은 건설사업안을 조기 제출 (집행연도의 전전년도 11월), 한미 양측이 1년간 검토·협의하여 연간 건설사업 계획 수립
- * 이견 발생시 국방부와 주한미군사 간의 협의채널을 통해 해소

○ **군수지원분야 우리기업 참여기회 확대, 중소기업 애로 해소**

- ‘한국 계약업체’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 나가기로 합의
- 사업 발주와 대금결제 기간 단축위한 구체적 방안·절차 마련
- * 한미 군수분야 상설협의체 신설, 군수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발주와 대금 지불 추적·관리방식 개선, 업체 애로사항 신속 해소 등

○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복리증진,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리 증진을 위한 노력 지속
- * 항목별 배정액을 논의시 인건비 항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평가
- * 이행약정에서 인건비 지원비율 확대 (71% → 75%)
- 미측은 인건비 집행 관련 상세 정보를 한측에 제공

○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 강화**

- 한미간 항목별 배정결과를 국회와 공유
- 「방위비분담협정 연례 집행 종합보고서」를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에 보고
- 미측, 현금 미집행액 현황보고서 연 2회 국방부에 제공
- 상기 보고서 및 기타 정기집행보고서 등을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국회에 보고
- *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사전·사후 ‘투명성·책임성’ 제고

② 국회 시정조치 반영 등 실효적 제도개선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분담금 배정부터 예산 편성 및 결산까지 투명하게 한미 간 협의 및 국회에 보고
 - 우리 국회에서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할 경우 미측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 제도개선 결과 한미 간 실질적 협의 메커니즘이 수립되어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 간 협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 예정

□ 결론 및 제언

- 1991년 이전까지 한미 양국은 주둔군지위협정(SOFA, 1966년 체결) 제 5조에 의거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분담하였지만, **1991년부터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분담하여 왔음
- 이번 제9차 SMA는 제8차 SMA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5년으로, 이는 그 이전의 SMA들이 유효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한 것과 차이가 있음. 초기에는 매년 협상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노력의 소모가 있었고, 근년에 들어와서는 빈번한 협상에 따른 총액 인상의 요구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개년 분담금 일괄 결정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음
- 그동안 9차례의 협정 체결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 구성 항목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점차로 개선하여 왔음. 특히 제9차 협

정은 2개의 **교환각서안**(제1조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안,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안)를 가지고 있는 바, 한측에서 제기하였던 개선 요구에 대한 **협상의 가시적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제9차 협정에서는 **제도개선 도입**에 따라 ①분담 항목별 배정 및 소요 검토에 대한 조정 강화, ②대한미군 지원 건설의 실질적 협의 체제 수립, ③군수비용 분담 사업의 업무방식 및 절차 개선, ④인건비 분담에 관한 투명성 제고, ⑤정보 공유 증진 등이 가능하게 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①분담금 배정(한미 공동 검토와 평가, 잠정배정액과 최종배정액의 법정 기일내 제출 의무), 예산 편성 및 결산, 국회보고(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보고서, 현금 미집행액 상세 현황 보고서 등 작성과 적절한 방식으로 국회 보고), ②특히 군사건설 분야의 업무 시스템 변환(건설사업목록안을 사업설명서와 함께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제출, 구체 사업계획을 사실상 한미 공동으로 수립할 예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획기적인 강화**가 가능하게 되었음
- 반면에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몇 가지 과제도 식별되었음. 제도개선 사항의 구체적 규정 확립, 방위비분담금 미지원액 해소 방안 강구, 미국이 주도적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 및 한국이 주도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운용할 수 있는 조치 강구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남북한 군사적 대치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있고 주변국들의 안보적 도전이 증대되고 있는 현 안보상황하에서, **한미동맹의 강화와 심화**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공고히 하고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전략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

가안보를 공고히 하는 현실적 방안. 특히 향후 수년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내지 불안정성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강력한 국방력과 전비태세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함**

- 단기적 방위비 분담 규모보다는 **중장기적 방위비 분담 제도의 개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 이익(합리성) 對 장기적 이익(합리성), 유형의 이익 對 무형의 이익, 지난 60년간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 국가 간 신뢰 문제 등을 감안하여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기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혜와 통찰력이 요구됨**
- **성숙한 한미 동맹과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의 구현 차원에서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 협정의 신속한 비준을 건의드립니다**

방위비분담금 공청회 진술자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차장)

방위비분담금 공청회 진술자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반복되는 협상 실패, 반복되는 국회의 책임 방기

- 91년 이래 문제투성이 방위비분담금협정은 정부의 무능과 기망, 국회의 무관심과 통제 실패 속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승인받아왔음. 그 결과 방위비분담금 집행은 제대로 평가, 검증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지난 8차 협정안 비준 심사 당시에 제기되었던 문제는 이번 9차 협정안에서도 반복되고 있음.
- 더 이상 국회는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고질적인 문제들을 방치해서는 안됨. 선불리 비준동의에 나설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책정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먼저 철저히 평가, 검증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
- 무엇보다 미집행금이 1조 2천억원이 넘는 만큼 분담금 총액을 삭감하고, 2016년 미군기지 이전사업 완료 후에는 지원 규모를 재검토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연례적인 미집행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총액 방식이 아닌 소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해야 함.

○ 미국 측 목표는 실현. 한국 측 목표는 무엇이었고, 실현되었나

- 분담금, 총액방식으로 다시 증액됨

- 5년간 유효한 협정을 통해 안정적인 미2사단 기지이전 비용 마련함.
-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 한도 비율 증가(71%→ 75%)로 미 국방부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함.
- 한국 측은 분담금 삭감,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 방지, 이자발생에 대한 대책 등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음. 매년 발생하는 이월을 최소화할 장치도, 이미 존재하는 전용, 불용된 돈들을 처리할 방안도 마련하지 못함.
- 2014회계연도 정부예산안 조정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출한 2014년 방위비 분담금 예산요구안이 기재부에 의해 889억원 삭감되어 7,997억원으로 제출, 승인됨. 쓰지 않는 돈 편성할 필요 없다는 의미임. 연례적인 이월방지를 위해 군사건설비 항목만 889억 삭감한 것임. 그런데 정작 협상단은 9,200억원에 합의함.

○ 8차 협정안 심사 당시와 9차 협정안 심사에서 반복되는 문제점

- 8차 협정안 비준동의 심사 당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개선을 요구받았음. 그러나 지난 5년간 개선된 것이 거의 없어 보임. 9차 협정안에서도 비슷한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회 보고 없이 방위비분담금이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 축적되는 문제
 -> 방위비분담금을 LPP 사업에 사용하기로 2000년 사전합의 했다는데, 정부는 2002년 국회 LPP 협정비준동의안 심의과정이나 2004년 LPP 개정협정 비준동의 심사과정에서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음. 그것을 몰랐던 국회는 2007년 3월 7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원안가결 시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 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기도 함.

- 5년 유효기간의 협정이 국회 통제권과 분담금 조정 가능성을 제약하는 문제

- > 안정적인 예산의 수립과 이행. 빈번한 협상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비용 절감 필요성 등을 제기, 국방예산 축소에 따른 미측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한다는 논리 동원함.

-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활용의혹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없는 문제

- >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이 영리활동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총액위주로 증액하는 방식의 문제

- >총 분담금 규모를 먼저 결정한 이후에 각 구성항목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 지속됨.

-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

- > 여전히 미군의 총주둔비용이나 정확한 분담률을 파악 못하고 있음.

- > 2008년 10월 국회 예결위는 “방위비분담금 집행 및 협상과 관련하여 방위비분담률, 직간접 지원비용 평가, 집행내역, 군사건설비용 축적 자금 등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국회에 공개가능한 자료를 공개하며, 제7차 협정 비준동의시의 부대의견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음.

- 국회 예산 통과된 이후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문제.

- > 제7차 방위비분담 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시 국회는 “정부는 매번 협상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협정 비준동

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제8차, 그리고 이번 협정안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제출됨.

- 과도한 분담금 책정과 분담금 증가율이 국방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문제
-> 8차 협정 증액 방식을 준용할 경우 2013년 합의액(8,695억)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인 2.2% 증액 반영한 8,886억원 정도임. 그러나 9차 협상에서는 8차 협상에 비해 21% 증액되었고, 2014년의 경우 2013년 대비 5.8% 인상됨.
->한국의 2014년 국방예산, 2013년 대비 4% 증액

○ 정부가 내세우는 제도개선, 과연 성과인가

1.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 강화

- 사전 조율 강화의 목적이 무엇인가.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막겠다는 것인지, 각 항목별 배정 금액을 조정하겠다는 건지, 무엇보다 실제 사전 조율을 할 수 있는지

2.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

- 이미 한미 군사건설 분야에서 합동조사단을 통해 사전 협의를 하고 있음. 장관급까지 상정할 수 있다며 단계적, 실질적 사전협의를 강조하는데 이 역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외교부 보도자료]

○ 미측이 사업 집행 직전(전년도 11월)에 건설 사업 목록만을 제출하던
현행 시스템을 고쳐서, 사업 목록안을 사업설명서와 함께 현행보다 1
년 앞당겨 제출하며 이를 기초로 1년간에 걸쳐 새로이 격상되는 「합
동협조단」 협의 등 실무급에서 장관급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적·실질적
사전협의를 통해 구체 사업계획 수립 ⇒ 한·미간 협의·조정 결과에
기초한 건설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이 가능 ⇒ 이월액
등 집행 부진문제 해소에도 기여

- 그러나 이미 8차 협정 이행합의서에는 예산,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제8협정에 따라 체결한 현물군사건설 이행합의서(2009
년~2013년)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전년 11월 30일까지 국방부에 제
출하는 현물 군사건설 사업목록에 ‘사업명, 추정예산 및 해당 건설에 대
한 간략한 설명이 명시되어야 한다’¹⁾고 되어 있음. 여기에는 개별사업
할당액, 잔여 방위비분담금 현물 자금 및 해당건설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그 동안 1장짜리 목록만 받아왔다고 고
백함. <세계일보, 2014.1.14., 「분담금 40% 비중 군사건설 분야에 초
점」 ‘정부 당국자는 “가령 지금까지는 ’건물 1 활주로 1’식으로 제목만
담긴 1장짜리 건설사업 목록서만 집행직전(전년도 11월)에 넘겨받았다면
이제는 예산, 설계 등 관련 내용이 담긴 설명서도 같이 넘겨 받는다”며
“서류 수령 시기도 지금보다 1년 더 빨라져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보
다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 국방부 대변인도 “군사건
설 분야에서 상시 사전협의를 하는 체제를 구축했다”며 “군사건설 사업 1년

1) 2009~2013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에 기초한 현물군사건설 이행합의서 5. 절차 및 책임사항
(4) 주한미군사는 해당 사업들이 시행될 각 연도 바로 전의 11월 30일까지 주한미군사가 선정한 사업에 대한
연도 현물군사건설 사업목록을 대한민국 국방부에 제공하며, 위 5. 가. (2)항에 서술된 대로 해당연도 8월 31일
까지 지속적으로 해당연도 현물 군사건설 사업목록을 신속히 최신화한다.
(가) ‘현물 군사건설 사업목록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서 승인된 현물 자금, 아래 5. 나. (3)항에 표기된 개
별 사업 할당액, 잔여 방위비분담금 현물 자금 및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다.

전에 사업 목록을 우리측에 제시하면 그 목록에 나와 있는 건설 계획이 사용 목적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한미간 서로 평가한다”고 말함.

[외교부 보도자료]

- o 또한 전년도, 현행년도 및 이후 수년간의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종합 검토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이를 위해 미측은 중장기 건설사업 계획을 제공 ⇒ 주한미군의 중장기 건설사업에 대한 한·미간 협의 체제 신설
- 분담금 특별협정 6조²⁾에 따르면 SOFA 합동위원회나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협정 이행약정 3항³⁾에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는 어느 일방이 요청시 개최된다고 명시됨. 현물군사건설이행합의서 4항⁴⁾에는 합동협조단(한국 국방부 건설관리과장, 미군 공병참모부장)을 구성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이행합의서의 조건 및 규약에 관한 양측의 책임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현행 규정으로도 합동협조단,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SOFA 합동위원회, SOFA 합동위원회에 명시된 외교경로 등 협의기구가 있음.

3. 인건비

-
- 2) 제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제6조 당사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 3)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 3.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는 한국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어느 일방이 요청시 개최된다.
 - 4) 2009~2013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에 기초한 현물군사건설 이행합의서 4. 합동협조단. 합동협조단은 분쟁을 해결하거나 본 이행합의서의 조건 및 규약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책임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방부 또는 주한미군사의 요청으로 소집될 수 있다. 현물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국방부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을 기존 71%에서 75%로 높였다”, “인건비는 대부분 국내 경제에 환원됐고, 85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8,500명의 고용 현황을 고용창출 효과로 왜곡함.
- 무엇보다 방위비분담금은 매년 인상되었지만,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매년 감원, 2006년 9,549명, 2012년 9,031명, 2013년 8,614명으로 감소했음. 이에 따라 분담금 중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해야 함에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정도로 유지되고 있고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도 동결 상태에 있음. 부대이전 비용 확보를 위해 인건비를 군사건설비로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규명되어야 함.
- 분담금 지급이 계속 늦어질 경우 4월부터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 무급휴가, 또는 일시해고를 할 수도 있다며,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것도 적절치 않음. 주한미군 측은 기지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분담금 비준동의 지연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자국의 경제위기 탓으로 돌리기도 하는 등 자기 필요에 따라 논리를 만들고 있음.
- 한국 정부가 기지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군 측의 협박을 조속한 비준동의의 이유로 활용하고 있음.

4. 국회 보고 및 정보공유

- 외교부는 이번 협상에 따라 “예산편성 및 결산과정에 이르기까지 국회보고 강화”, “항목별 배정 검토 결과의 국회 보고에 대한 미측의 동의 확

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우선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 「현금 미집행액 상세 현황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나 군사안보에 저촉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것이 개선 조치인지 의문임.
-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보고서는 각 항목별 보고서를 취합하여 만들면 됨. 이행약정에 따르면 인건비의 경우 주한미군사령부는 3월 1일 이전에 전년도 연간 집행보고서를 한국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계획예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사업의 경우 주한미군사령부는 모든 인증된 송장을 한국 국방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현물군사건설사업의 경우 미군측이 설계하고 국방부가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꾸로 국방부가 주한미군사령부에 계약서 사본과 분기별 집행보고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보고서, 송장들을 정리하면 종합 연례 집행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그 동안에도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하지 않았던 것뿐임. 이것을 협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임.
- 중요하게 보고되어야 할 것은 분담금을 축적하게 된 경위와 축적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여부임. 특히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임. 현금 미집행액 상세 현황보고서의 경우, 현재 현금 미집행액 연도별 현황은 국방부나 국회도 알 수 있음. 따라서 현금 미집행액 현황보고서가 아니라 2000년 이후 현금 축적 현황, 기 집행된 현금 사용 내역, 향후 사용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야 함. 이런 내용을 미군 측으로부터 보고 받고, 국회에 보고해야 함. 현금 축적분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도 확인하여 국회에 보고한 후 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를 요청해야 마땅함.
- 또한 국회에 보고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없음. 영문안을 보면 may share, when necessary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 “대한민국

국방부는 3개 항목별 배정에 대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협의 결과를 대한민국 국회와 공유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상기 보고서 및 그 밖의 정기 집행 보고서상의 정보를 군사 보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공유할 수 있다”

- 실제 많은 경우, 자료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국방부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협상 중인 관계로 공개하고 있지 않음”, “동 집행보고서는 미측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음” 등으로 답변하고 있음.

5. 삭감을 못하면 미집행을 막을 장치라도 있는가

- 미집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전혀 없음.
- (협정비준동의안) 연도 말에 미집행 현물 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이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미집행 지원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 (건설이행에 관한 교환각서 미국 측) 8.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수립한다. 만일 연도 말에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9. 현물 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례 점검체계를 수립한다. 특정 사업에서 현물 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미합중국에 대한 현금 제공을 포함하여,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 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지난 5년간의 집행 결과 미집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절차’가 수립되었는지, 수립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 미집행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환각서 8항의 ‘만일 연도말에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는 경우, 동 지원분은 다음연도로 이월한다’는 수정되어야 함. 미집행 지원분의 발생 사유를 검토, 평가한 후 이월 여부를 정해야 하며, 연도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집행금의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불용, 국고환수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국회 국방위 검토보고서(2013.10)는 미군의 설계 지연에 따른 군사시설 사업 이월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2012년에 추진(중)된 군사시설 사업 총 38개 중 2012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의 상당수가 진도율이 0% 수준으로 부진한 것은 미측의 설계 지연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음”라고 적시하고 있음.

○ 국회 비준에 앞서 해야 할 일.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 정부가 제도개선이라고 한 부분에 대한 평가, 검증이 있어야 함.
- 9차 협상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8차 협정 집행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있어야 함.
- 이번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대폭 증액을 수용한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야 함. 실효성 없는 제도개선 교환각서를 이유로 증액을 수용했는지, 그것은 타당한 것인지 평가되어야 함.
-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방지할 것인지 확인해야 함.

- 2016년 기지이전사업 완료 이후인 2018년까지를 협정의 유효기간으로 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함. (비준동의안 5조,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 하에서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 연도에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지원, 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따라서 국회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밝혀야 함.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용 방향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교수)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용 방향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교수)

I. 방위비분담의 배경과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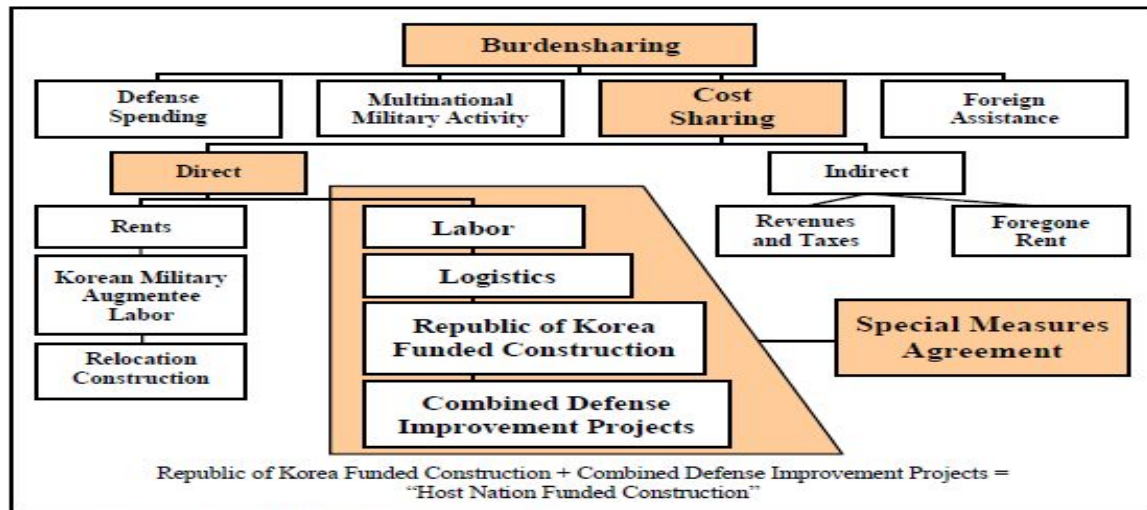
방위비분담은 냉전종식 및 경제적 한계로 인하여 미국이 세계적인 안보의 부담을 동맹국들과 나눠야겠다고 인식함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공동방위(common defense)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분담(responsibility sharing)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고, 이에 근거하여 해마다 동맹국들의 기여도를 평가하기까지 하였다. 미국은 1995년부터 Toward New Partnership: An Overview of the 1995 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⁵⁾ 동맹국들의 기여도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책임분담은 특정 국가의 국방비, 군사력 현대화 노력, 국제적인 군사활동, 대외원조 등 세계평화를 위한 모든 활동이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었다. 따라서 2005년부터 미국은 보고서 작성을 중지하면서 부담분담(burden sharing)⁶⁾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부담분담은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어려움을 동맹국들이 나눈다는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핵심은 미국 군대가 주둔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해당 동맹국에게 부담시키는 비용분담(cost sharing)이었다. 부담분담과 비용분담의 관계와 항목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5)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발간된 보고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www.defense.gov/pubs/allied.aspx>. 1997년부터 *A 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on the Common Defense*라는 제목으로 변경하였다.

6) 일부에서는 burden sharing을 ‘방위분담’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실제의 뜻이 덜 명확하게 반영되고, 방위비분담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

< 표 1 > 방위비분담의 체계



Source: Derived from USFK Regulation 415-1

* 출처 : Inspector General in DoD, *Host Nation Support of U.S. Forces in Korea* (Washington D.C.: DoD, August 25, 2008), p. 1.

<표 1>을 보면 부담분담은 한국의 국방비, 세계평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해외군사원조 등과 함께 비용분담을 포함하고 있다. 비용분담의 경우에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있는데, 간접지원은 세금면제나 무상대여 등을 포함하고, 직접지원은 대여료 지원, 카츄사 지원, 미군기지 이전비 지원 등으로서, 현재 한국이 특별협정을 통하여 5년 정도마다 합의하고 있는 방위비분담은 바로 이 직접지원을 말한다. 한국의 방위비분담에는 미군이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임금, 군수지원, 건설, 한미연합전력증강사업 등을 포함하는데, 한미연합전력증강사업의 경우 2009년부터는 군사건설에 포함되었다.

II. 방위비분담에 관한 이론적 검토

방위비분담 자체가 미 의회와 국방부에서 제기한 행정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이론화 노력은 많지 않았다. 그 중에서 연구자가 발견한 이론적 업적의 하나는 오하이오 대학에서 김성우(Sung Woo Kim)가 작성한 박

사학위 논문으로서, 그는 동맹관계에서 부담분담의 규모를 결정하는 4가지 유형을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동맹의 필요성”(necessity)과 “동맹국들의 역량”(capacity)의 조합에 의하여⁷⁾ 방위비분담의 적정 규모가 결정된다면, 동맹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국가는 상당한 방위비분담을 하더라도 그 지원을 확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방위비분담에 소극적이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동맹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동맹국은 역량 범위 내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역량이 향상되는 만큼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표 2>와 같다.

< 표 2 > 방위비분담의 형태

부담분담 결정요소		동맹지원의 필요성(Necessity of the Ally's Support)	
		높음(High)	낮음(Low)
목표달성 역량 (Capacity of achieving Goals)	높음 (High)	유형 I (협상으로 기여 결정) bargaining contribution	유형 III (낮은 기여) under contribution
	낮음 (Low)	유형 II (공평성/기여 증대) fair/increasing contribution)	유형 IV (무 기여) no contribution

* 출처 : Kim, Sung Woo, "System Polarities and Alliance Politics,"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2012. p. 94.

<표 2>를 설명하면, 유형 I은 동맹의 필요성도 높지만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도 큰 경우이다. 현재의 미국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 동맹국들과 협상을 전개하여 기여정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유형 II는 동맹의 필요성은 높지만 역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7) 이정환의 경우 한국의 안보위협, 주한미군의 주둔목적, 주한미군의 규모, 한국의 경제력, 한국의 대미기여도의 변수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보는데, 이것들을 크게 분류하면 결국 필요성(안보위협, 주한미군 주둔의 목적과 규모)과 능력(한국의 경제력과 대미여도)로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정환, “시스템 사고를 이용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정책 레버리지 전략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야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역량이 미흡하여 요구만큼 부담하지는 못하고, 가능한 대로 점진적으로 증대시켜 나간다. 유형 III은 동맹에 기여할 역량은 충분하지만 동맹의 필요성은 낮은 경우로서, 냉전종식 이후 현재의 유럽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현재보다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위주로 최소한만 부담한다. 유형 IV는 기여할 수 있는 역량도 불충분하지만 동맹의 필요성도 낮은 경우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해당된다.⁸⁾

Ⅲ. 방위비분담에 관한 독일과 일본의 사례

1. 독 일

(1) 현 황

독일에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 이후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군이 주둔하였고,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후 소련군은 철수하고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의 군대가 나토군의 일원으로 주둔하고 있다. 이 중에서 주독미군은 2013년 현재 50,500여명으로서, 육군 35,200명, 해군 485명, 공군 14,450명, 해병대 36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⁹⁾ 이들은 육군이 주력으로서 하이델베르크(Heidelberg)에 미육군 유럽사령부가 위치하고 있고, 미국 유럽사령부 겸 최고동맹군사령부가 스투트가르트(Stuttgart)에 위치하고 있다. 미군은 독일 중부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20여개 주둔지역 60여개 기지에 분산되어 있다.

독일은 1951년 6월 19일에 체결된 주둔국지위협정(SOFA)과 1959년 체결된 이의 보충협정에 근거하여 주둔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 왔다. 독일은 패전국을 동맹국으로 편입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8) Sung Woo Kim, "System Polarities and Alliance Politics,"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2012), pp.94-95.

9)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3* (London: IISS, 2013), p. 140.

방어해주는 데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들이 요구하는 바를 대부분 수용한다는 자세였다. 지불방법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현금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고용인력의 해고에 따른 퇴직금과 사회보장 비용, 주둔군이 공무수행으로 입힌 손해 중 독일 부담금 등의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지급하여 왔다.¹⁰⁾

독일이 부담해온 방위비분담을 성격에 따라 구분해보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이다. 서베를린 점령군(미국, 영국, 프랑스)에 대한 직·간접 지원, 미군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서독 주둔군에 대한 지원, 나토 회원국으로서 지불하는 기여금이다. 독일 통일로 인하여 앞의 두 가지는 대부분 소멸되고, 현재는 나토 분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서베를린 점령군에 대한 지원의 경우 서독은 분단상태였던 베를린의 방위와 연합군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 투자, 연합군 생활필수품 보관 및 주둔에 따른 제반 비용의 대부분을 담당하였다. 그 액수는 당시 서독 국방비의 20%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많았는데, 1956년의 경우 국방비 72억 마르크의 12.4%인 8억 9500만 마르크, 1966년에는 국방비 203억 마르크의 11.6%인 23억 4700만 마르크를 제공하였다. 1976년에는 국방비 389억 마르크의 23.1%인 90억 마르크, 1986년에는 국방비 620억 마르크중 24.8%인 154억 마르크를 지원하였다. 1950년부터 1994년까지 독일이 지원한 연합군 주둔 비용은 총 298억 7,022만 마르크 (약 177억 달러)에 달한다.¹¹⁾ 이는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계속되어 43년 동안 계속되었고, 따라서 연평균 4.17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계산된다. 독일은 미국·영국·프랑스군이 서베를린에서 철수한 1994년까지 연합군 주둔경비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련군이 동베를린과 동독으로부터 철수하는 비용도 전액 부담하였다.

독일은 미국과 별도의 양자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10) 탁성환, “독일의 방위비 분담 정책과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086호, p. 3.

11) 정상돈 『독일의 방위비분담 및 주독미군 기지 환경관리정책』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9), pp. 51-52.

하였다. 미국은 1960년대 들어서 소련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방비 소요가 대폭적으로 증대되자 서독에 부담분담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독은 1961년부터 대규모 미국무기 구입 및 대금 선(先)지급, 채무 선(先)변제, 미국 국채 대량 매입, NATO 인프라구축 증액, 미군숙소 건설 및 수리, 핵연료 구입, 무이자 대여금 지원, 제3세계에 대한 미국 지원금 인수,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지원, 주독미군의 세금 및 각종 요금 면제 등의 명분으로, 1975년까지 14년간 총 112억 3,000만 달러를 지불하였다.¹²⁾ 이것은 연 평균 8억 달러를 상회하였고, 2013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규모와 유사한 금액이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1994년에 베를린 주둔군들이 전원 철수함으로써 대폭 축소되었고, 지금은 미군 복귀에 따른 실직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임대료, 기지이전 비용분담 등 직접지원과 함께, 토지시설 공여와 각종 면세혜택 등 간접지원을 제공하는 수준에 국한되고 있다.

현재 독일이 방위비분담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NATO 공동예산이다. 이것은 NATO 본부 및 근무인력 유지비, 동맹국 영역의 방공임무 수행, 지휘 통제체제/동맹통신체제 유지, 합의된 특정분야 전력개선 등에 사용된다. 이 예산은 민간예산(civil budget), 군사예산(military budget), NATO 안보투자사업(NSIP: NATO Security Investment Programme)으로 구성되는데, 회원국들은 각 분야별로 거의 동등한 비율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다. 2012년 1월에서 2013년 12월까지 2년 간을 보면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바(미국은 22%, 영국과 프랑스 11%), NATO 직접지원 총예산의 약 15%이다.¹³⁾ 그런데 이것은 각국의 국민총수입(GNI: gross national income)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¹⁴⁾ 동맹에 대한 독일의 특별한 필요성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 NATO의 2013년 예산을 보면 민간예산사업 215,473,000유로, 군

12) Ibid., pp. 34-39.

13) "NATO Common-funded Budgets and Programs," at: http://www.nato.int/cps/en/natolive/topics_67655.htm (검색일: 2014년 2월 17일).

14) Carl Ek, *NATO Common Funds Burdensharing: Background and Current Issue*, CRS Report for Congress RL30150(Feb 15, 2012), p. 7.

사예산의 경우 1,448,799,776 유로, 안보투자사업 700,000,000유로이다.¹⁵⁾ 따라서 독일은 2013년의 경우 약 3억 5천만 유로 정도(1유로를 1,400정도로 고려할 때 원화로 4,914억 정도)의 NATO 공동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은 1990년 10월 통일 이전까지는 점령군의 주둔비, 양자협정을 통한 주독미군 지원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였으나, 통일 후에는 나토 분담금 이외에는 토지 및 시설 공여 등 간접지원 위주로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나토예산의 담당분을 방위비분담으로 고려할 경우 독일은 한국의 1/2정도에 해당되는 방위비분담을 하고 있는 셈이다.

(2) 특 정

독일과 한국의 방위비분담을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독일은 패전국의 입장에서 점령군의 주둔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배상금과 같은 성격이 포함되어 있었고, 독일은 점령군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어쨌든 독일은 패전 이후 경제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러한 부담을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그것이 독일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동의를 받아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 통일 이후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은 독일의 방어보다는 유럽전체의 방어, 즉 나토군의 일원으로 전환되었다. 통일로 인하여 독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이면서 심각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이 부담하고 있는 나토 공동예산과 기타 직접지원비를 합칠 경우 한국의 1/2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 되는데, 독일의 국방비(2012년의 경우 319억 유로, 404억 달러)와 GDP(2012년의 경우 2조 660억 유로, 3조 3,700억 달러 정

15) "The Direct Funding of NATO's Three Budget," at: http://www.nato.int/cps/en/natolive/topics_67655.htm (검색일: 2014년 2월 17일).

도)가 한국의 1.4배와 3배(한국의 2012년 국방예산은 290억 달러, GDP는 1조 1,500억 달러)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면¹⁶⁾ 낮은 부담이라고 할 것이다.

독일의 방위비분담은 국방부, 외부무, 재무부 등에 분산되어 편성되어 있다. 나토의 민간예산 분담금은 외무부에서 지원하고, 군사예산과 안보투자사업은 국방부에서 지원하며, 미군의 주둔에 따라 일부 지불하는 비용은 재무부가 담당하는데, 민간예산의 액수는 크지 않다. 또한 지원 분야와 절차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분담에 관한 사항을 따로 협의 및 협상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원해야하는 항목을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해둔 상태에서 그 항목에 소요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베를린 수도 이전이나 미군기지의 철수 및 반환에 따른 평가와 보상에 관하여 협상한 적은 있지만, 방위비분담의 액수와 조건에 관하여 새롭게 협상을 하지는 않았다.¹⁷⁾

2. 일 본

(1) 현 황

주일미군은 2013년 현재 미국 태평양사령부(US Pacific Command) 예하의 육군 2,500명, 해군 6,750명, 공군 12,500명, 해병 14,950명으로 총 36,700여명이다.¹⁸⁾ 이들은 80여개의 지상기지와 해상에 분산되어 있다. 이들 이외에도 미 국방부가 고용한 민간인력 5,500명, 일본인 고용원 23,000여명이 주일미군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령부로는 요코타에 5공군사령부가 있는데, 그 사령관이 주일미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세계 최대 함대인 미7함대가 일본의 요코스카에 기지를 두고 있다. 유엔군사령부(UNC)의 7개 후방기지¹⁹⁾도 일본

16)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3*, p. 137,

17) 탁성한, “독일의 방위비 분담 정책과 시사점,” p. 4.

18)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3*, p. 309.

19) 유엔사 후방 7개 기지는 요코타(横田, 공군기지), 자마(座間, 육군기지, 미육군 1군단 전진기지), 요코스카(横須賀, 해군기지), 사세보(佐世保, 해군기지),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 후텐마(普天間, 해군/해병대기지), 화이

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비해서 주일미군은 그 규모도 크지만, 주요사령부가 포함되어 미군에서 차지하는 실제적 비중은 높고, 훈련장, 병참 및 저장시설, 숙소와 휴양소 등 상당기간 독립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일본은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 제6조와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24조, 그리고 1987년 미일 특별협정(SMA)에 근거하여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이 중 비용분담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특별협정으로서, 일본도 5년 단위로 이를 개정하고 있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2011년에 체결된 것으로 일본은 주일미군을 위한 노무비용(labor costs), 설비/시설비용(utilities costs), 그리고 훈련 재배치(training relocation)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주일미군의 훈련과 관련하여 괌(Guam)과 같은 미국영토로 미군이 재배치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도 담당하고 있다.²⁰⁾ 일본은 독일과 유사하게 패전국으로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왔고, 따라서 지원이 적극적이면서 다양하다.

일본의 경우 SOFA에 의해서는 시설비(건설과 운영유지), 기지주변 민원 해결을 위한 시설 건설/정비, 국유지/사유지 임대료, 기지이전 비용, 그리고 주일미군에 대한 공무피해 보상비를 분담하고 있고, 특별협정에 의해서는 고용원 인건비와 공공요금(수도, 전기, 가스비 등), 훈련을 위한 이동 비용 등을 부담한다. 일본은 미군이 요구하는 비용의 항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충족시켜주고자 하고, SOFA나 특별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추가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협의하여 융통성있게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양측 국무장관(외무상)과 국방장관(방위상)이 연례적으로 만나는 ‘2+2 안보협의위원회’(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에서 결정된다. 2013 회계연도의 주일미군 지원예산은 <표 3>과 같다.

트비치(오키나와 해군/해병대기지) 이다.

20) Japan Ministry of Defense, *Defense of Japan 2013* (Tokyo: Ministry of Defense, 2013), p. 138.

< 표 3 > 2013 회계연도 주일미군 지원예산

(단위: 일본 엔화)

구 분	세부내역	금 액	중간 합산	총 액 (%)
미군주둔 지원비 (防衛省 예산)	주둔비용분담(cost sharing)	569억	1,769억	2,231 (34.8%)
	미군시설 주변구역 환경개선비	569억		
	시설임차료	958억		
	재배치비(relocation)	7억		
	어업보상 등 여타비용	234억		
	시설개선사업비	209억	462	
	노무비(복지비 등)	253억		
非防衛省 예산	기지보조금 등 관련 省 비용	377억	2,037억	2,037억 (31.8%)
	정부소유토지 제공 비용	1,660억		
특별협정(SMA) 부담금	고용비(기본급 등)	1,144억	1,398억	1,452억 (22.6%)
	공용비(전기, 가스, 수도, 교통비 등)	249억		
	훈련이동비(야간착륙훈련)	4억		
	훈련이동비(훈련강화사업)	11억	53억	
	훈련 이동비 지원(기지재편 항공훈련)	42억		
오키나와 특별위원회 (SACO) 예산	토지환수사업	30억	77억	77억 (1.2%)
	훈련장 개선사업	2억		
	소음 감소사업	19억		
	SACO사업 촉진비	27억		
미군기지 재편 관련 예산	미해병대 이전사업	70억	614	614 (9.5%)
	오키나와기지 재편사업	60억		
	미육군사령부 보강사업	84억		
	항모항공단 이전사업	369억		
	훈련장 이전	300억		
	시설 재배치	94억		
총지원 예산	6,411억엔 (100%)			

* 출처 : Japan Ministry of Defense, Defense of Japan 2013(Tokyo: Ministry of Defense, 2013), p. 139.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2013년 회계연도 미군지원 예산은 총 6,411억엔인데, 이중 SOFA와 특별협정에 근거한 직접지원비는 3,683억엔이며 간접지원비는 2,037억엔이다. 이 외에 오키나와 특별위원회 관련예산이나 미군기지 재편관련 예산과 같이 당시 제기된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특별

히 지원되는 비용도 있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일본의 지원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최근에는 감소되고 있는데, 2011년에 일본이 미군을 지원한 예산은 6,912억엔,²¹⁾ 2012년에는 6,540억엔²²⁾으로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군에게 비용감소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²³⁾ 고용원의 숫자 제한 등과 같은 자체적인 효율화 노력을 경주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지원 규모 비교는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100엔을 1,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직접지원비만을 계산할 경우에는 4배가 넘는다. 일본이 특별협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액수와 한국의 방위비분담만을 비교한 후 한국의 1.6배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할 수는 있지만, 협정은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는 의미가 없다.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이 한국보다 많고, 일본의 국방비(2012년의 경우 4조 7,100억 엔, 594억달러)와 GDP(2012년의 경우 474조엔, 5조 9,800억 달러)가 한국의 2배와 5배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²⁴⁾ 적지 않은 방위비분담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2) 특징

일본의 방위비분담은 SOFA, 특별협정, 추가적인 협의에 의한 제공의 3가지 형태이다. 일본은 주일미군이 일본의 방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가급적 지원한다는 개념으로서 지원을 위하여 가능한 규정을 찾거나 없으면 만드는 방식이다. 따라서 한국의 “총액형”과 대비하여 일본의 방위비분담 형태를 “소요충족형”으로 부르기도 한다. 다만, 소요를 충족시켜 준다고 하여 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13년 인건비의 경우 인력의 한도를 22,625

21) Japan Ministry of Defense, *Defense of Japan 2011* (Tokyo: Ministry of Defense, 2011), p. 277.

22) Japan Ministry of Defense, *Defense of Japan 2012* (Tokyo: Ministry of Defense, 2012), p. 233.

23) Japan Ministry of Defense, *Defense of Japan 2013*, p. 138.

24)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3*, p. 306.

명으로 설정하고 있고, 공용비의 경우에도 연 249억엔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²⁵⁾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소요충족형이지만 부분적으로는 한도를 정하는 총액형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국방비나 GDP 규모가 크더라도 방위비분담이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013 회계연도의 경우 주일미군 지원금 6,411억엔은 방위 관련 예산 4조 6,804억엔²⁶⁾에 대하여 13.7%에 달한다. 순수 방위성 예산 미군 주둔 지원비(2,231억엔)와 특별협정(SMA) 부담금(1,452억엔)을 합친 3,683억엔을 계산하더라도 방위예산의 7.9%에 해당되고, 특별협정 부담금(1,452억엔)만 계산해도 방위예산의 2.2%에 달한다. 한국의 2012년 국방예산 34조 3453억원에서 방위비분담금(비용분담) 8,695억원을 계산할 경우는 2.53%로서,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일본은 모든 방위비분담 예산을 일본 정부가 직접 집행하고 있다. 현금이 미측에게 이전되지도 않고, 모두 일본 내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통제할 수 있고, 일본인 고용원의 고용조건 등도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미군이 요구하는 비용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사용내용은 일본이 장악하는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3. 방위비분담 이론에 의한 독일과 일본의 사례 분석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표 2>에서 제시되고 있는 김성우의 방위비분담 모형에 적용할 경우 독일은 개별적인 국가가 아닌 나토의 일원으로서 봐야 할 것이다. 독일의 개별적 필요성에 의한 방위비분담은 거의 없고, 나토 공동예산의 15%를 분담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

25) Japan Ministry of Defense, *Defense of Japan 2013*, p. 138.

26) Ibid., p. 118.

는 나토국가들의 경제력을 합할 경우 동맹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고, 대신에 동맹을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위협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경제규모가 크지만 한국의 1/2 정도에 해당되는 정도만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일본의 경우 경제력이 적지는 않으나 개별국가이기 때문에 동맹이 요구하는 바를 지원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다. 또한 최근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고, 중국과 센카쿠(중국명으로는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싸고 갈등이 점증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비증강 가속화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은 <표 2>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 중에서 II에 해당된다.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는 바는 가급적이면 수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IV. 한국의 방위비분담 분석

1. 주한미군 현황

주한미군(USFK: United States Forces Korea)은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하여 최초로 진주하였다가 1949년 대부분이 철수하였다. 그러다가 1950년 6.25전쟁으로 다시 진주한 후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다. 6.25전쟁 종전 직전인 1953년에 주한미군은 최대 8개 사단 32만 5천명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2014년 현재 약 2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미 8군 소속의 육군이 19,200명으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미 7공군 예하 공군이 8,800명, 미 해군은 250명, 미 해병대 250명이다.²⁷⁾ 1945년부터 현재까지 주한미군의 규모 변화를 보면 <표 4>와 같다.

27)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3*, p. 315.

<표 4> 주한미군의 병력변화 추이

연도	병력규모	연도	병력규모	연도	병력규모
1945	76,000	'58	52,000	'75	42,000
'46	42,000	'59	50,000	'76	39,000
'47	40,000	'60 - '63	58,000 - 56,000	'77	42,000
'48	16,000	'64	63,000	'78 - '83	39,000 - 38,000
'49	500	'65	62,000	'84 - '86	43,000 - 41,000
'50	214,000	'66	52,000	'87	45,000
'51	253,000	1967 - '68	56,000	'88	46,000
'52	266,000	'69	61,000	'89	44,000
'53	325,000	'70	54,000	'90 - '91	43,000
'54	223,000	'71	43,000	'92 - 2004	37,000 - 32,500
'55	85,000	'72	41,000	'05	29,500
'56	75,000	'73	42,000	'06 - 2013	28,500
'57	70,000	'74	38,000		

* 출처 : 황인락, “주한미군병력규모 변화에 관한 연구: 미국의 안보정책과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0년 12월), p. 33 참조.

2. 방위비분담의 경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적 조치로서 미국과 체결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근거하여 1991년부터 미군 주둔비용 일부를 분담해오고 있다. 이는 SOFA 규정에 주둔경비 지원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선례를 따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한국의 방위비분담은 1991년의 1억 5,000만 달러를 시작으로 매년 그 규모를 증대시켜오고 있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1·2차 특별협정으로서 1995년 3억불을 목표로 하여 증액해 나가는 방식을 적용하면서 매년 분담금을 협상하였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양국 입장의 차이가

동맹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여 1996년 제3차 특별협정을 통하여 전년도 분담금을 기준으로 매년 10%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최초로 3개년 분담금을 한꺼번에 결정하였다. 제4차 특별협정에서는 2001년까지 적용할 분담금을 협상하였는데, 인건비와 군수지원의 일부를 원화로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제5차 특별협정은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적용되었는데, 기간 내 인상률은 전년도 분담금의 8.8%로 하되 전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의 증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2005년과 2006년 적용된 제6차 특별협정에서는 기간 내 인상률을 동결하면서 분담금 전액을 원화로 지급하였다. 2007년과 2008년에 적용된 제7차 특별협정은 2008년부터 전년도의 액수에 전전년도의 물가상승률만 증액하였고, 군사시설건설의 현물사업 비율을 10%로 상향조정하였다.

2009년부터의 방위비 분담은 2008년 체결된 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연도별 분담금은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4%로 상한선을 적용하였고, 군사건설비의 경우 단계적으로 현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은 2011년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非인적비용(NPSC: None-personnel Stationing cost)의 42%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⁸⁾

3. 특 징

한국측에서 제공하는 방위비분담은 최초 4가지 항목으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3가지 항목으로서,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이 주요 항목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한국이 제공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의 38%를 차지하고, 막사 등 비전투시설 건축을 포함한 군사건설

28) Mark E. Manyin et al. *U.S. South Korea Rel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ctober 4, 2011), p.18.

비용은 44%를 차지한다. 2008년까지는 탄약고 등 전투용 및 전투근무지원 시설 건설을 위한 연합방위력 증강사업(CDIP: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gram)을 별도로 관리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군사건설 비용으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철도와 차량 수송 등 용역 및 물자 지원을 위한 군수지원비는 18%를 차지한다.

한국의 방위비분담은 지출내용이나 소요경비와는 상관없이 총 분담규모를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이후에 구성항목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1, 2차 특별협정에서는 주둔비용의 1/3을 목표로 산정하였고, 제3차 특별협정에서는 달러화 기준으로 매년 10%를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제4차 특별협정 이후부터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분담금을 산정해왔다. 따라서 방위비분담의 증감은 쉽게 판단할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제대로 쓰여지는 지에 대한 내역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미 양국은 수시로 방위비분담의 총액을 협상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액수와 조건이 변화되어 왔다. 방위비분담 협상과정은 미국 측에서는 액수를 증대시키고, 한국 측에서는 증액규모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조건을 한국에게 유리하게 전환시켜온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지속됨으로써 방위비분담이 호혜성을 기반으로 동맹국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협상의 성격으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타결이 지체되어 예산안이 통과되고나서 뒤늦게 국회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국회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동맹을 오히려 훼손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협상의 과정이 국민들에게도 노출됨으로써 반미감정을 자극하기도 하였다.

4. 방위비분담 이론에 의한 한국 사례 분석

한국의 경우를 <표 2>에서 제시되고 있는 김성우의 방위비분담 모형에 적용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일본과 유사한 형태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경제력이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부담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대신에 미국의 동맹을 필요로 하는 정도는 다른 어느 국가에 비해서 큰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현재도 1953년 체결한 정전협정에 의하여 북한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일촉즉발의 상태로 대치하고 있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설치되어 즉각적인 연합대응을 보장하고 있으며,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 독수리(Foal Eagle) 연습, 을지-프리엄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 연습 등 대규모 연합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함에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이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할 경우 한국은 <표 2>에서 유형 II에 해당되고, 미국이 요구하는 바는 가급적이면 수용해 나가야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V. 결론과 제언

방위비분담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한국 안보를 위한 미국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여 그 노력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한국의 조치라는 사실이다. 아무런 검토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지불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액수와 조건을 둘러싼 지나친 협상으로 동맹국간의 신뢰를 손상하는 것은 방위비를 분담하는 근본정신과는 배치된다. 한미동맹에 덜 의존해도 되는 상황이면 상관없으나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할 상황이라면 방위비분담의 조건이나 액수를 둘러싼 논쟁이 동맹 간의 신뢰

에 영향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동맹은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에 기초한 양자관계이다. 동맹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관계도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나에 대한 침해와 동일시하여 자동적으로 군사적 기여를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끌어낼 수 없다. 즉, 동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며, 이는 정치적 측면에서 실제 기술적·실무적 측면까지 광범위하게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²⁹⁾

김성우의 모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방위비분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맹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도인데, 한국의 경우 미국의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재래식 도발에 대해서는 한국이 상당한 군사력을 구비하고는 있지만 북한이 도발할 때 승리하는 것보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규모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다. 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전쟁억제를 위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한국이 2012년 미국과 국지도발에도 공동대응한다는 데 합의하여 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한 것도 미국과의 연합대응을 과시함으로써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와 같은 도발을 북한이 자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였다. 참여정부 때 합의되어 2015년 12월 1일부로 해체되도록 되어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속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한미연합대응태세를 약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고려하면 미국의 지원 필요성은 더욱 크다. 북한은 10여개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한 데 이어서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미사일에 탑재하여 한국을 공격할 정도로 “소형화·경량화”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은 확실한 방어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의 핵무기를 이

29) 차두현, “한국, 편성·집행 투명성 제고, 거시 공동기획 토대 확보,” 『통일한국』 (2014년 2월), p. 21.

용하여 응정보복한다는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은 2016년 정도에는 17-52개, 2018년 정도에는 26-61개 정도로 핵무기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더욱 소형화하여 다양한 화기로 발사할 능력을 갖출 가능성도 없지 않다.³⁰⁾ 이렇게 되면 한국의 독자적인 대응은 더욱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위력이 강해질수록 한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미국의 지원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면 방위비분담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난 2013년 1월 12일 발표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협상 결과의 경우, 안보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미국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재정에 지나치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고심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에서는 미국이 1조원 이상을 요구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대체적으로 그에 근접한 규모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추측하였지만, 결과는 9200억원 정도에 그쳤다. 그 외에도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투명하면서도 체계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도 합의하여 방위비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양국 간 사전 조율을 실시하고, 건설사업과 군수지원 분야에 관한 상설협의체를 신설하며,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고받는다고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각서도 교환하였다. 방위비분담이 발표된 이후 비판여론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도 국민들의 대부분은 이번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부담금이 정해졌다면, 이제는 그것을 수용한 상태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방위비분담의 취지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한국 방어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라면, 최소한의 재정지원으로 동일한 규모와 질의 미 군사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동일한 재정지원으로 최대한 규모와 질의 미

30) 문장렬, “북한 핵·미사일의 실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2014 KINSA 세미나 발표문 (2014년 2월 7일), p. 29.

군사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방위비분담이 문제시될 때마다 일부에서는 일본과 같은 ‘소요충족제’ 즉 미군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안보위협은 일본에 비하여 매우 직접적이기 때문에 미군이 준비태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소요를 제기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이 제공해야 하는 금액이 오히려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는 주일미군 고용 일본인 근로자의 임금을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미군 1인당 일본인 근로자 수가 우리의 2배 정도 많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었다. 소요충족제를 도입하여 전체 규모를 융통성있게 관리하더라도 세부항목에서 상한선을 둘러싸고 협상해야 한다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현 총액제를 바탕으로 하되 소요충족제의 장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방위비분담금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한미연합 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제9차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로서 미국 측이 한국 정부와 국회에 사용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의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실사를 하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한국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대신에 한미 양국이 감사팀을 구성하여 분담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진단하고 평가할 경우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발견되어 바로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조차 한국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위비분담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감사한 결과를 문서를 통하여 작성 및 공개할 경우 방위비분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다.

한국은 방위비분담을 적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에 빠져서는 곤란하다. 방위비분담은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활용하는 데 한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불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하여 국방비를 절약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크게 보면 한국의 재정능력으로 미군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용미(用美)의 한 방법일 수 있다. 한국 이외에 다른 동맹국들도 상황에 따라 분담을 하고 있다. 그동안의 경제발전을 통하여 G20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력을 키웠으면 이제 한국은 그것을 사용하는 데도 성숙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상당한 액수의 방위비분담을 하면서도 일부의 오해나 성숙되지 못한 태도로 인하여 동맹국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미의 효과는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문헌>

- 문장렬. “북한 핵·미사일의 실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2014 KINSA 세미나 발표문(2014년 2월 7일).
- 이정환. “시스템 사고를 이용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정책 레버리지 전략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정상돈. 『독일의 방위비분담 및 주독미군 기지 환경관리정책』.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9.
- 차두현. “한국. 편성·집행 투명성 제고. 거시 공동기획 토대 확보.” 『통일한국』 (2014년 2월호).
- 탁성한. “독일의 방위비 분담 정책과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086호(2006년).
- 황인락. “주한미군병력규모 변화에 관한 연구: 미국의 안보정책과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0년 12월).
-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A Report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by the Secretary of Defense." Washington D.C.: DoD, 2003.
- Ek, Carl. *NATO Common Funds Burdensharing: Background and Current Issue*. CRS Report for Congress RL30150(Feb 15, 2012).
-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3*. London: Routledge, 2013.
- Inspector General in DoD. *Host Nation Support of U.S. Forces in Korea*. Washington D.C.: DoD (August 25, 2008).
- Japan Ministry of Defense. *Defense of Japan 2011*. Tokyo: Ministry of Defense, 2013.
- , *Defense of Japan 2011*. Tokyo: Ministry of Defense, 2011.
- , *Defense of Japan 2012*. Tokyo: Ministry of Defense, 2012.
- Kim, Sung Woo. "System Polarities and Alliance Politics."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2012).
- Manyin. *U.S. South Korea Rel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October 4, 2011).
- NATO. "NATO Common-funded Budgets and Programs." at: http://www.nato.int/cps/en/natolive/topics_67655.htm(검색일: 2014년 2월 17일).
- , "The Direct Funding of NATO's Three Budget." at: http://www.nato.int/cps/en/natolive/topics_67655.htm (검색일: 2014년 2월 17일).

**국회는 8차 협정보다 개악된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해야**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국문제팀장)

국회는 8차 협정보다 개악된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해야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문제팀장)

정부가 미국과 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함. 그 주요 내용은 ▲2014년도분 9200억원, ▲연도별 인상률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 적용(상한선 4%), ▲배정 단계 사전조율 강화 등 ‘제도개선’, ▲협정기간 5년 등임.

정부는 이른바 ‘제도개선’ 등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과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방지 장치 마련 등의 요구나 국회의 미집행금 우선 집행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음. 특히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규정이 삭제된 것은 8차 협정에 비해 개악된 부분임.

이에 국회는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부결하여 한미당국이 전면 재협상에 나서도록 해야 함.

1. 정부 여당의 감액 방침에도 어긋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미측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의해 자국이 부담해야 할 미2사단이전비용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빼돌려 축적한 금액이 2008년 10월 현재 1조1193억원이었고, 2013년 8월 현재 7100억원임.

8차 방위비분담 협정 기간 중 협정액과 실제 편성액의 차액 합계(감액분)가

3035억원임. 한미당국이 과다한 이월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감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분 이월액이 1890억원이고, 불용액 합계도 572억원에 이름. 여기에 미측의 방위비분담금 축적금에서 발생한 최소 3천억원의 이자소득 추정액을 합치면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 관련 자금은 무려 1조5천억원이 넘음.

박근혜 정부는 협상 초기에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군사건설비를 삭감할 이유가 생겼다면 방위비분담 총액을 감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도 지난해 7월 외교부와의 당정 협의 뒤 방위비분담금을 총액 기준으로 감액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정부는 2014년도 국방예산 증가율 4.2%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 (5.8%)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했음. 이는 2013년 방위비분담금 예산편성액 7360억원에 비해 무려 25%가 늘어난 것임. 여기에 정부 주장대로 8차 협정 기간 중 감액분까지 9차 협정 기간에 부담한다면 우리는 매년 평균 6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1조 원 이상의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해야 함.

2. 8차 협정보다 개악된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규정

1) 현물지원 88% 규정 전면 삭제

< 표 1 >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현물지원 조항 비교

구 분		8차 협정 관련 조항	9차 협정 관련 조항	문제점
본협정	제3조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현물지원으로 전환되며, 2011년부터는 시설의 설계 및 시공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면 현물로 지원된다.……대한민국이 지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 각서가 채택되어 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한다.……당사자의 관계당국은 미집행 지원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설계관리비 제외 전액 현물지원 규정 삭제되어 현금지원 확대 가능

구 분		8차 협정 관련 조항	9차 협정 관련 조항	문제점
		원하는 건설의 지침과 상세 절차 등 세부 이행사항은 당사국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문서에 따른다.		
교환각서	제목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현물지원 교환각서의 의미 상실 (현금지원 포함 전제하 교환각서)
	6	설계 및 시공감리는 총 사업비의 평균 12%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설계 및 시공감리는 총 사업비의 평균 12퍼센트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설계감리비 12% 규정은 현물지원 규정과 관계없음
	9	대한민국은 2009년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30%를 현물로 제공하고, 2010년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60%를 현물로 제공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88%를 현물로 제공한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88% 현물지원 명시조항 삭제 이행약정 체결 의무조항 아님

정부는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2008~2013년) 체결 당시, 군사건설비를 현금지원에서 현물지원(88%까지)으로 연차적으로 전환기로 한 것을 최대 성과로 내세운 바 있음.

정부는 이번 9차 협정에서도 현물지원 88%는 당연하다고 주장. 그러나 8차 협정에는 “설계 및 시공감리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면 현물로 지원된다”는 규정이 있고, 교환각서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88%를 현물로 제공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9차 협정과 ‘군사건설 이행 교환각서’에는 “현물지원 88%” 규정이 전혀 없음. 100% 현금지원한다해도 이를 막을 규정이 없음.

정부가 ‘설계 및 감리비 12%’ 규정(6항)을 근거로 현물지원 88%는 당연

하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시공비와는 관계없는 규정임. 9항의 현물지원 절차 규정도 8차 협정에 딸린 현물지원 교환각서에 명시됐던 ‘현물지원 88%’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9차 협정에 남아있는 문항으로는 현물지원을 보장할 수 없음. 8차 협정에 딸린 교환각서의 ‘현물지원 88%’ 규정이 9차 협정에도 자동 연장된다는 주장도 8차 협정과 9차 협정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협정일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88%를 현물로 제공한다.”고 시한을 명시하고 있어서 2014년 이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따라서 9차 협정에서 현물지원 88% 규정을 삭제한 것은 군사건설비 상당액 또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 될 수 밖에 없음. 이는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규정을 8차 협정 이전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임.

2) 현금지원 부활 이유 : 미측 부담 C4I 시설 현금지원 가능성

C4I(지휘통제정보체계) 문제는 2003~2004년 한미 간 미군기지이전 협상 때부터 문제가 된 사항. 당시 C4I구축비용에만 수조원이 소요된다는 주장도 제기됨. 이에 한미당국은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에 한측의 C4I비용부담을 제한하고 주한미군의 C4I(CENTRIXS-K)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조항을 자세히 규정.

그러나 미국은 미군기지이전협상이 타결되자마자 주한미군 C4I의 현대화 비용을 방위비분담 항목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측에 C4I 비용부담을 요구함.(연합뉴스, 2004. 10. 18) 2007년 3월 20일, 권행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MP검토결과 발표 자리에서 학교·병원·복지시설과 C4I를 거론하며 “이 4가지는 아직 협상이 종결되지 않았고, 조건부로 계속 협상

을 할 필요가 있음을 미측에 이야기했다”고 밝힘.(통일뉴스, 2007. 3. 20) 미측의 점증하는 요구에 따라 2010년말에도 C4I 등의 한미 간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못함.(내일신문, 2010. 12. 15)

< 표 2 > C4I 비용 증가 추이

	한국부담	미국부담	총액
2003. 6.	202억원		
2004. 4. (IMP)	480억원		
2006. (중간MP)	3,816억원		
2007.	2,150억원		
2008. 8. (PMC중간보고)	3억6,300만 달러 (5,245억원)	3억9,300만달러	7억5,600만달러
2008. 10. 15.	2억7,800만 달러 (4,017억원)	3억7,400만달러	6억5,200만달러

(한국일보 “용산기지 지휘통제시설 이전비 ‘고무줄’ ” , 2008. 10. 24)

한편, C4I비용은 미군기지이전 협상 초기에 비해 20배 이상 폭증.(표 2 참조)

시퀘스터에 따라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미측 입장에서는 4억 달러에 가까운 주한미군 C4I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려움.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측이 부담해야 할 C4I비용을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예정임. 국방부는 진성준 의원에 대한 대면 보고 때, 미측이 보유한 현금 미집행액은 “LPP사업, 특수정보시설, 설계비, 기타 건설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힘.³¹⁾ 이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제공되는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현금지원분에서도 미측이 부담해야 할 특수정보시설(C4I) 비용을 충당할 것이 확실시 됨.

31) 진성준 의원, <방위비분담금, 국회통제 강화방안>, 2013. 10. 22쪽

미측이 C4I시설을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건설과정에서 특수정보시설의 보안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임. 즉, C4I시설만큼은 한국의 접근을 차단하고 자신들이 직접 짓겠다는 것임.

3) 미측이 부담해야 할 C4I시설 건설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위반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제5조 3항에는 C4I 이전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제공, 기존 장비 이전, 900만불 이내의 장비 교체를 규정하고 있음. 또,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C4I의 한미 공동 성능향상 및 개발계획은 용산기지이전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주한미군사를 위한 C4I 성능향상 또는 개선을 위한 자금은 합중국이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²⁾ 협정에 따른 우리측 부담분 외에 미측이 부담해야 할 C4I비용까지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

3. 협정 기간 5년 규정은 방위비분담금의 또 다른 전용을 허용한 것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종료되는 2016년 이후에는 군사건설사업 소요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나라로서는 협정기간이 짧아야 부담을 덜 수 있음. 그런데 미국은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종료되는 (2016년)이후에도

32)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제5조. “3. 양당사국은 이전과 관련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을 다음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가. 대한민국은 시설종합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설에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기존 장비를 이전한다. 특정 장비가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이 교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장비는 교체될 것이다. 장비의 교체를 위한 대한민국의 부담은 미화 9백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유엔사 및 연합사를 위하여 현재 기획·계획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한미 공동 성능향상·개발계획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주한미군사를 위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성능향상 또는 개선을 위한 자금은 합중국이 조달한다.”

기지이전 사업 우선 진행 필요성에 따라 미루어둔 오산, 대구, 군산 등 비이전기지 내에 군사건설사업 소요가 산적해 있다”(연합뉴스 2014. 1. 12)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도 이를 그대로 수용했음.

그러나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군사건설비 누계 1조5727억원 중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을 위해 축적한 자금은 1조1193억원으로, 나머지 4534억원은 기존 미군기지에 투입되었음. 2013년도 군사건설비 예산에도 오산, 포항, 군산기지의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중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잔여사업으로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방위비분담협정 항목 중 하나인 ‘군수지원비’에도 기존 미군기지의 시설 유지 및 개량을 위한 ‘시설유지비’가 소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2012년의 경우 274억원의 시설유지비가 편성되기도 했음. 이처럼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러 항목으로 기존 미군기지 군사건설 관련 예산이 한국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었음.

미국은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협상 때마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총액 중 군사건설비 비중을 대폭 확대했음.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하기 직전 해인 2001년에 1041억원(21.3%)이었던 군사건설비는 2013년에 3850억원(44.3%)으로 늘었음. 액수로는 4배 가까이 늘었고, 비율로는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기존 주한미군기지에 군사건설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2012년도의 경우 경북 왜관의 캠프 캐롤에 4100만 달러, 대구의 캠프 헨리에 4800만 달러의 예산이 편성되었음.³³⁾

이처럼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 비중이 대폭 늘어나고 한미당국의 예산이 여러 항목으로 투입되었는데 기존기지 군사건설사업 소요가 산적해

33) 『H.R. 1540(112th):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2』, p. 403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약 협정기간 5년 동안 방위비분담금 전체 예산 중 군사건설비 배정이 2013년의 44.3% 정도의 비율로 이뤄진다면 2017년과 2018년의 군사건설비 합계는 9천억원에 육박함.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막대한 자금이 기존기지 군사건설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임.

< 표 4 > 9차 협정 기간 중 방위비분담금 총액 및 군사건설비 추정액

(단위 : 억원)

연도	방위비분담금 총액	군사건설비 추정액 (2012년과 2013년 군사건설비 비율 44.3% 적용)
2014년	9,200 (한미 간 합의액)	4,076
2015년	9,320 (2013년 물가상승률 1.3%, 확정액)	4,129
2016년	9,534 (기재부 2014년 예상 물가상승률 2.3% ³⁴⁾ , 추정액)	4,224
2017년	9,791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평균 2.7%, 추정액)	4,337
2018년	10,055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평균 2.7%, 추정액)	4,454
계	47,900	21,220
평균	9,580	4,240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협정기간 5년을 고집한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판단함. 즉, 원래 2016년으로 예정된 미군기지건설사업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미국은 자신들이 직접 부담하곤했다던 8억8460달러(2013. 7. 30,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 인준청문회 발언³⁵⁾)마저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거나,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가 밝힌 대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되는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나 지휘통제정보체계(C4I) 구축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임. 이렇게 되면 미군기지이전비용의 거의 대

34) “올 소비자물가 2.3% 상승 전망”(뉴시스 2014. 1. 9)

35) <민중의소리> 2013. 8. 21

부분을 한국민 혈세로 충당하고 미국은 최첨단 주한미군기지를 사실상 거저 얻게 되는 것임.

4. 미국 정부, 우리 국민 혈세로 최소 3천억원의 이자소득

1) 한미당국, 그 동안 부인하던 이자소득 인정

주한미군이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줄곧 부인하던 한미당국이 9차 협정 협상 과정에서 처음으로 관련 사실을 인정함. 지난 7년 동안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끈질기게 정부, 국회, 법원, 언론 등을 상대로 미국이 십수년 동안 우리 국민 혈세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축적하고 이자소득까지 올리고 있다고 주장해온 것이 사실로 입증된 것임.

평통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입수한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의 커뮤니티 뱅크와의 금융거래 자료는 미국이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돈놀이를 하여 2006~2007년 2년간 566억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을 확인해 주고 있음.³⁶⁾ 이를 근거로 추산해보면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하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자소득은 최소 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임.

2) 이자소득은 영리행위 금지한 한미SOFA 위반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돈을 빼돌려 축적하고 이를 부동산펀드 등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얻은 것은 명백한 영리행위임. 주

36) 자세한 내용은 <통일뉴스> 2013. 11. 20. “미국,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으로 3천억 넘게 이자소득”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008> 참조

한미군의 영리활동은 ‘한미SOFA의 정신에 위배되는 활동의 금지’를 규정한 한미SOFA 제7조(접수국 법령의 존중)³⁷⁾에 위배됨. 육군본부의 행정협정 해설서는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주둔 미군에 대한 특별한 면제와 제외는 공동방위라는 특수한 목적 아래 주어진 것이지 어떤 특정의 개인이나 군대 또는 국가에게 특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외교 관계에 관한 빈협약 제42조에 규정된 것 등에 비추어 보건대 주둔미군 자체 및 그 구성원, 군속과 그 가족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미합중국의 국가 자체의 영리행위가 금지됨은 물론이다.”³⁸⁾

3) 이자소득의 주체는 커뮤니티 뱅크가 아니라 미국 정부

그런데 한미당국은 미국정부가 아니라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평통사가 방위비분담협정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한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의 자료에 따르면 “당 지점은 커뮤니티 뱅크를 통하여 미국정부가 가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밝히고 있음. 방위비분담금 운용을 통해 미국정부가 이자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축적된 방위비분담금 운용의 주체이자 수혜자가 미국정부(주한미군)라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의 주체도 미국정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

반면, 커뮤니티 뱅크는 미 국방부가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계약을 맺어 해

37)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고 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한미소파 7조)

38) 육군본부, 『행정협정해설서』, 1988, 61쪽

외미군의 금융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일 뿐, 이자소득의 주체가 될 수 없음.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의 자료도 “커뮤니티 뱅크를 통하여 미국정부가 가득한 이자소득”이라고 밝히 이자소득을 얻은 주체는 미국정부이며 커뮤니티 뱅크는 이자소득의 중계자일 뿐임을 명시하고 있음.

4)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소득을 얻었다는 주장은 제2의 거짓말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시인 이후 정부관계자는 과거 서울지방국세청이 커뮤니티 뱅크를 미 국방부 소속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상반되게 ‘미국 사기업’이라고 규정하고, 미국 정부는 “통상적인 은행의 영업 활동으로 미국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커뮤니티 뱅크의 한미SOFA상 법적 지위는 초청계약자임. “초청 계약자는 미국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을 포함하여 미정부와 주한미군을 위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이행만을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로서……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에 미 본토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정부와 협의해 SOFA상 초청계약자로서 지정하게 된다.……이들은 주로 군사은행, 비행장 시설물관리, 학교, 음식물 조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노동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노무조항 해설』, 2001. 4, 10~11쪽) 즉, 커뮤니티 뱅크는 미국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계약의 이행만을 위해 주한미군을 위해 한국에서 일하는 군사은행인 것임.

한미당국이 커뮤니티 뱅크를 ‘사기업’이라거나 ‘통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은행이 미국정부의 공적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써 미국정부가 이자소득을 얻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하려는 것임. 즉, 한국민 혈세로 미국정부가 이자소득을 얻은 사실이 밝

혀지면 우리 국민의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사실을 조작하려는 것임. 이는 한미양국 정부가 지난 7년 동안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온 데 이어 미국정부가 이자소득을 얻지 않는다는 제2의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5) 세금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이자소득에 면죄부 주려는 것

뿐만 아니라 한미당국은 이 사안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문제로 축소'왜곡하려 하고 있음. 만약 이 사안이 미국정부나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미국정부가 얻은 이자소득 자체가 합법화되는 것임. 나아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이 정당화됨. 이 사안을 납세문제로 축소'왜곡하여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이자소득에 면죄부를 주려는 기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됨.

국회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정부(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분담금을 매년 얼마씩 불법 축적했는지, ▲축적된 자금으로 매년 얼마의 이자소득을 올렸는지, ▲이자소득을 누가 최종적으로 수취했는지, ▲이자소득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런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은폐한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밝혀야 함.

5.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불법

1)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위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LPP협정 개정 시 새로이 포함된 미 2사단 주력부대인 동두천의 캠프 캐슬,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의정부의 캠프

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텐리, 캠프 잭슨(강조 필자)의 대체시설자금지원은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LPP개정협정 제1조 2항에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우리 국가 재정인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미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LPP개정협정을 위반하는 것임.

2)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

LPP협상 초기에 미측은 LPP사업과 방위비분담금의 연계를 거부한 바 있음. “지난 ‘01년의 SMA 협상시, 한측에서 LPP 지원금을 방위비분담금의 독립항목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미측은 ‘LPP는 한시적 사업이므로 별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거부한 바 있다”³⁹⁾는 기록이 이를 입증함.

국회예산정책처는 “SMA 비준시 국회가 방위비분담금의 총액과 사업항목이 명시된 SMA를 동의한 것이므로, 비록 방위비분담금 사용의 주체가 미국일지라도 한국의 동의와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내역을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이러한 분담금 집행행위는 SMA 위반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⁴⁰⁾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외(LPP사용) 사용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여기서 “한국의 동의와 승인”이라 함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정부의 ‘양해’가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승인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임. 이처럼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위반임.

39) 이석중(육군 대령). <방위비 분담 협상방안>.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2004.

40)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IV』, 2008.10, 212쪽

< 표 5 >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LPP협정 개정사항⁴¹⁾

구분	반 환 기 지	반환 연도		대체시설 자금 지원
		현행 ⁴²⁾	개정안 ⁴³⁾	
서울	택시 에빅스	'02	'03	불필요
	캠프 킴	'05	'08	대한민국
	캠프 그레이	'06	'06	미국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06	'06	미국
	캠프 에세이온	'10	'08	미국
	캠프 홀링워터	'10	'05	대한민국
	캠프 카일	'07	'08	미국
	캠프 시어즈	'11	'06	미국
파주	캠프 하우스	'06	'05	미국
	캠프 스탠턴	'07	'05	미국
	캠프 에드워즈	'07	'05	미국
	캠프 게리오웬	'08	'05	미국
	캠프 자이언트	'11	'05	미국
	캠프 그리브스	'11	'05	미국
동두천	H220	'08	'08	대한민국
	캠프 님블	'11	'08	대한민국
오산	오산공군(베타사우스)	'02.10	'03	불요
	오산공군(알파사이트)	'08	'08	미국
김포	김포 우편시설	'05	'05	미국
하남	캠프 콜번	'08	'07	미국
원주	캠프 이글	'11	'08	미국
	캠프 롱	'11	08	미국
인천	캠프 마켓	'08	'08	대한민국
춘천	캠프 페이지	'11	'05	대한민국
포항	주한미해군사령부포항 파견대	'11	'11	미국
대구	캠프워커(H-805)	'07	'06	대한민국
부산	캠프 하야리아	'11	'05목표	불필요
	부산 DRMO	'05년 6월	'05	대한민국
동두천 ⁴⁴⁾	캠프 캐슬		'06	미국
	캠프 케이시		양국의 지도부간 합의하에 결정	미국
	캠프 호비			미국
의정부 ⁴⁵⁾	캠프 레드클라우드			미국
	캠프 스텐리			미국
	캠프 잭슨		'08	미국

41)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비준동의안검토보고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수석전문위원, 2004. 11, 14쪽.

42) 2002년 LPP협정(필자 주)

43) 2004년 LPP개정협정(필자 주)

44) 2004년 LPP개정협정에 새로 포함된 동두천의 미2사단 이전대상 기지(필자 주)

45) 2004년 LPP개정협정에 새로 포함된 의정부의 미2사단 이전대상 기지(필자 주)

3) 국가재정법 위반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어긴 불법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 예산정책처는 “방위비분담금 예산은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프로그램)의 단위사업 예산에 속한다. 그런데 미 2사단 이전비용은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의 예산에 속한다. 그러므로 ‘방위비분담금’을 ‘미 2사단이전’에 사용하는 것은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예산 프로그램을 넘어선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예산 집행.”⁴⁶⁾이라고 밝힘으로써 방위비분담금의 LPP사업 사용이 국가재정법 제45조 위반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또 군사건설비 예산을 매년 편성한 대로 지출하지 않고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기 위해 따로 빼내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그 연도에 지출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 내에 있어서의 세입에 의해 조달되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가 다른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⁴⁷⁾임.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가 2002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1조 1193억원이 불법 축적되었고, 2013년 8월 현재 남아있는 방위비분담금 축적액이 7100억원임. 이는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않을 경비를 예산에 책정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제3조 위반임.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않을 사업비를 그 해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 압박이 초래된 것임.

46)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IV』, 2008.10, 212쪽

47) 신해룡, 『예산정책론』, 세명서관, 2005, 23쪽

이 같은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은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
에의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16조 4항의 공개성의
원칙⁴⁸⁾도 위반한 것임.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적 전용을 국민 몰래
미국에 ‘양해’해 주었고 이 사실을 국회와 국민에게 숨겨왔으며 마치 주한미
군이 군사건설비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국회에 결산을 보고해왔기 때문임.

4) 국회 의결 무시 및 국회법 침해

국회는 7차(2007~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심사 때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
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의결한 바 있
음. 이어서 2008년 10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차 협정 비준동
의시의 부대의견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기도 하였
음. 2014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정부는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내용에
분담금 미사용액의 우선집행 및 차년도 예산편성시 미사용액을 공제하는 방
안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서도 국회의 요구
를 완전히 묵살하고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계속 허용하였
고 미사용액 우선집행 등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음. 이는 국회 의결을 완
전히 묵살한 것이자 국회법 84조 2항에서 규정한 국회의 결산심사결과 시정
요구권을 침해한 것임.⁴⁹⁾

48) “예산은 국민과 국회에 공개되지 않으면 안된다…또한 공개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모든 단계에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이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재정을 감독 통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함.”(신해룡, 『예산정책론』, 세명서관, 2005, 16쪽)

49) 제16대 국회 개정국회법은 “결산심사의 형식성을 극복하고 국회결산심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5) 헌법 위반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결산을 국회에 허위 보고한 것, 그리고 주한미군이 군사건설비를 미2사단이전 비용으로 쓰기 위해 따로 은행에 예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사실을 감추고 방위비 분담금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헌법 제54조 1항)을 유린한 불법임.

6)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을 어기고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를 지원하는 명분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지원한다는 것임. 그러나 미2사단 이전은 그 목적이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7) 요구자 비용부담 원칙 위반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기지이전을 요구한 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LPP협정과 용산협정의 성립근거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임.

개선방안의 하나로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 국회가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권을 신설하였다.”(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설』, 2004, 313쪽)

한미SOFA에 따르면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미군의 운영유지비에 속하고 당연히 미국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며 한국은 다만 시설과 구역의 제공 책임만 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부지제공 이외에 미군의 운영유지비(이전비용)를 LPP협정과 용산협정을 통해서 부담기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전을 요구한 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 때문이었음.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이러한 원칙이 약소국에 비용을 전가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LPP협정과 용산협정이 한국민을 기만한 협정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임.

6.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한미 간 양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이상희 전 국방장관은 2008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방위비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에 대해서 “2000년부터 이미 한미 양국 정부가 양해했던 사항으로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답변했음.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10월 31일, “분담금 사용 용도는 지난 2002년 양국 국방 당국끼리 합의가 있었다”며 “특히 미국은 2004년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에 전용할 것이라고 했고, 한국 관계부처들도 공식적으로 합의해 준 바 있다”⁵⁰⁾고 주장했음. 외교통상부는 2009년 2월, <국회 외통부 보좌관 대상 설명자료>에서 “2007년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정부는 미측과 함께 이 문제를 진지하게 재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분담금의 LPP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기존의 결론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 위에서 인용한 “지난 ‘01년의 SMA 협상시, 한측에서 LPP 지원금을 방위비분담금의 독립항목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미측은 ‘LPP는

50)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창간 58주년 특별 인터뷰, 2008. 10. 31.

한시적 사업이므로 별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거부한 바 있다”는 기록은 이른바 ‘2000년의 양해’ 주장과는 모순되는 내용으로, 그런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케 함. 또한 2002년의 “양국 국방 당국 간 합의” 주장에 대한 평통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외교부는 “2000년 LPP 사업 구상 설명시 미측은 자체 예산과 함께 방위비분담금을 동 사업자금으로 사용 하겠다고 우리측에 제안하였고 우리측은 이를 양해하여 왔”다고 답변하였음. 또, “2004년 합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2003-4년 LPP 협정 개정 협상 당시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업 사용에 대한 우리측의 양해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음. 이상희 전 국방장관도 2008년 11월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미간 양해가 “문서로 작성되지는 않았”⁵¹⁾ 다고 실토한 바 있음.

정부의 이 같은 답변은 한미 간 양해 또는 합의라는 것이 한결같이 조약 체결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한 문서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줌.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것은 용산협정 및 LPP협정과 는 별도로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추가로 안기는 문제이자 LPP개정협정의 핵심 내용을 대체하는 문제임. 따라서 그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정부 간 합의라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고, 최소한 LPP개정협정의 위상 및 법적 형식과 동일한 수준인 한미 간 정식 협정 체결과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사항임. 그러나 이 합의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더욱이 정부는 이런 중대한 사실을 2004년 LPP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과정에서 국회에 정식 보고조차 하지 않았음. 이런 점에서 한미 간의 합의 또는 양해는 LPP개정협정을 대체하는 법적 효력이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

51) 제278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5호, 2008. 11. 21., 52~53쪽.

은 물론임. 따라서 한국 정부가 ‘양해’ 또는 ‘합의’해준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의 불법성이 합법화되는 것이 아님.

7. 방위비분담금 전용 등으로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

평통사는 2009년 2월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미국은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7억5천만 달러만 부담할 것이라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2008년 10월 보고서를 주요 근거로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미 간 기지이전비용 분담 비율이 94.2%(15조6928억원) : 5.8%(9750억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⁵²⁾

< 표 6 > 한미양국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항 목	한국정부 주장	부담국	실제부담 예상액	부담액(비율)
건설비	7조 5천억원	미국	9,750억원	9,750억원 (5.8%)
	5조 8천억원	한국	방위비분담금 + 민간투자 임대주택 건설비 = 6조 5,250억원	15조 6,928억원 (94.2%)
부지매입비	1조 105억원		5조 8천억원	
평택지원비 환경치유비 SOC	2조 3,573억원		1조 105억원	
			2조 3,573억원	

그런데 정보공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2011년 9월 공개한 미국 비밀문서에 따르면 “한국이 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히고

52) 유영재,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문제점과 청문회의 필요성”,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에 관한 공청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9. 2. 24, 71~73쪽.

있음. 2007년 4월 2일 작성된 미 대사관의 3급비밀 전문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는 “한국의 부담분은 전체 비용의 93%”라고 추산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이 차이는 한국의 계산 방식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주는) 방위비분담금 전용분과 민자투자(BTL) 부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⁵³⁾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013년 7월 3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에 따른 미국 부담 비용은 8억8460달러로 추산된다”면서 “나머지 비용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거나 한국 정부에서 직접 부담할 것”⁵⁴⁾이라고 밝혔음.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은 한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줌.

그러나 정부는 2004년 기지이전협상과 협정 체결과정에서 요구자 부담원칙에 따라 용산미군기지이전비용은 한국이,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여, 한국과 미국이 기지이전비용을 절반씩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왔음. 국회는 정부의 이런 주장을 믿고 기지이전협정을 비준 동의해 주었음.

정부는 미측이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사실을 밝힐 때까지 이를 숨겨왔음. 위의 비밀 전문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국방부가 심판의 날(day of reckoning)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임.

정부는 자신들이 숨겨오던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사실이 폭로되자 국회와 국민을 속이면서 국가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끼친 점을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후안무치하게도 한미당국이 이를 오래 전부터 양해해왔다고 강변했음. 정부는 지금까지도 한국이 부담하는 미군기지이전비용이 모두 얼마인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밝히지 않고 있음.

53) <프레시안> 2011. 9. 28

54) <민중의소리> 2013. 8. 21

8. 법적 근거 없는 막대한 규모의 미집행액 운용

< 표 7 > 제8차 특별협정 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미지원액 규모⁵⁵⁾

(단위 : 억원)

구 분	이월액('13년)*	불용액('09~'13년)	감액편성액('09~'13년)	계
군사건설	1,488	451	2,735	4,674
군수비용	402	121	300	823
계	1,890	572	3,035	5,497

※ 이월액은 다음 년도 사업예산으로 집행되어 누적분이 없어 2013년도 이월금액만 표기함.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분, 이월액, 불용액 등 미집행액이 거액으로 발생하는 것은 한미간 협상 때 방위비분담금을 매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한 결과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8월 말 현재 (군사시설개선비) 집행률이 33.7%에 불과하여 1,500억원 이상의 이월이 예상”⁵⁶⁾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처럼 미집행액의 과도한 발생에 대해 국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지켜지지 않아 국회의 예결산 심의권이 무시되고 있음.

1) 감액분은 8차 협정 종료 이후 지급 의무 없어

감액된 예산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2013. 6. 14)에서 “우리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국가재

5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2014. 2, 19쪽.

56)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Ⅱ』, 2013. 11, 346쪽.

정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 제1조는 “주한미군사는 분담금의 항목별 자금 배정액을 국방부에 통보한다”라고 되어있고, ‘이행약정’2조 나(군사건설비)는 “현물군사건설 개별사업은 한국과 협의 하에 주한미군사령관이 선정 및 승인”한다고 규정하여 군사건설사업의 수립이 주한미군사령관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감액 배정과 그로 인한 책임은 미측(주한미군사령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된 방위비분담금을 협정 종료 이후에 지급할 의무가 없음.

8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임.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8차 협정에 따른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 의무도 종료됨.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르더라도 협정이 종료된 이후 감액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분을 지급할 법적 의무도 없는 것임.

2) 방위비분담금 이월은 국가재정법 위반

이월액과 관련하여 8차 특별협정(3조)과 그 부속합의서인 교환각서(8조)는 “만일 연도 말에 미집행 (군사건설)지원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라고 되어있음. 뿐만 아니라 협정 제5조는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근거하여 합의된 절차를 거쳐 각 연도에 선정되었으나 협정 종료시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을 계속 이행해 나가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협정 종료 이후에도 8차 협정에 따른 군사건설비의 계속 집행을 보장하고 있음. 이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경우에만 이월을 허용하는 국가재정법을 위배하고 예산의 기본원칙인 단연도 예산주의를 무시한 초법적인 조치로 우리의 재정주권에 대한 심

각한 훼손이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굴욕적인 협정임. 이월액이 매년 대규모로 발생하는 것은 군사건설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의 소요제기를 바탕으로 세워진 군사건설 계획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방만하고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3) 불용액을 미측에 다시 제공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

불용액의 경우 국가재정법 상 국고귀속이 원칙이지만 방위비분담금 중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군사건설비의 경우 미군에게 다시 지불함으로써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음.

9. 국회 권한 침해하는 정부의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늑장 제출

국회는 2014년 예산안 심사 때 “정부는……향후에는 국회 예산안 승인 전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상일정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함. 이 같은 부대의견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달린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에도 예산안이 통과된 지 1개월이 넘는 2014년 2월 7일에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함. 그리고는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 내에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음. 정부가 국회의 계속되는 요구를 무시하고 협정안을 상습적으로 뒤늦게 제출하는 것은 국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으로 의심됨. 정부는 심지어 2월 임시국회 때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노동자들이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음.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늑장 제출해놓고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음. 정부가 그토록 노동자들을 생각했다면 협상기간을 앞당기거나 1조5천억원이나 남아있는 군사건설비 축적 관련 자금을 활용하면 되지 국회를 협박할 일이 아님. 정부는 미집행금도 용도가 결정되어 있어서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을 항목과 용도가 전혀 다른 남수단과 병비로 전용한 사례도 있고, 심지어 12년 전인 2002년부터 매년도의 미집행액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음.

10. 국회는 9차 협정 비준동의의 부결하여 한미당국이 재협상하도록 해야

정부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그 운용에 대한 국회의 거듭되는 지적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9차 협정에서도 그 불법·부당성을 시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물지원 부분은 오히려 개악되었음. 따라서 국회는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 청문회, 공청회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그 운용의 불법·부당성을 명명백백히 밝혀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키고 한미당국이 재협상에 나서도록 해야 함.

1)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 핵위협 증대에 따른 주한미군대비 태세 강화’나 ‘미 국방예산 자동삭감’ 등을 들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압박하였음. 하지만 이른바 ‘북한 핵위협’은 본질적으로 남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핵공격위협에 대응한 것이고, 미 국방예산 삭감문제 또한 과도한 전쟁비용 지출 등 미국의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로서 한국의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용을 부담할 사안이 아님. 우리 정부조차도

B2와 B52 폭격기, 핵잠수함 등의 한반도 파견은 주둔비용과 개념적으로 다르며 주둔비용 결정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음. 그런데도 대폭 증액이 이뤄진 것은 미국의 압력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음. “최근 급박해진 안보상황을 감안해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한국일보 2014. 1. 13)는 외교당국자의 설명은 이를 방증함.

따라서 국회는 한미당국이 재협상을 통해 아무런 타당한 근거도 없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대폭 증액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도록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함.

2)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금지를 명시해야

군사건설비는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의 원천이고, 불법 부당하고 방만한 예산 집행의 온상이 되고 있음. 또한 감액 편성과 고질적인 이월을 야기하여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방위비분담금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군사건설비 항목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말아야 함. 이것이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임. 군사건설비 항목을 폐지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 중 군수지원비의 한 항목으로 기존기지의 시설유지 및 개량을 위한 ‘시설유지비’가 설정되어 있고, 연합방위력증강사업으로 기존기지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자체 예산에도 기존 미군기지 군사건설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기지 시설 개량과 건설은 가능함.

따라서 국회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를 거부하여 한미당국이 재협상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3)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 및 C4비용 등으로 전용되는 것도 막아야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5년, 미태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으로 가족주택 임대료를 내겠다는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다고 폭로한 바 있음. 노 전의원은 “한미당국이 ‘가족주택은 임대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이 국민관심사가 되고 정치쟁점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합의의사록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문서 교환으로 처리하기로 했다”⁵⁷⁾고 폭로했음.

이와 관련하여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는 2007년 4월 2일 본국에 보낸 3급비밀 전문에서 “한국의 (미군기지이전비용) 부담분은 전체 비용의 93%”라고 추산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이 차이는 한국의 계산 방식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주는) 방위비 분담금 전용분과 민자투자(BTL, 한국의 민간 업자가 건물을 지어준 뒤 일정 기간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⁵⁸⁾ 버시바우 대사가 민간투자 부분을 한국 부담으로 판단한 것은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제4조 1항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용산기지 안에 있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소요 주택을 미국의 비용으로 임차 또는 리스하도록 되어 있음.⁵⁹⁾ 또, 미2사단 가족주택 임대료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부담해야 함.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57) 연합뉴스, 문화일보 2005. 5. 26

58) 프레시안 2011. 9. 28.

59)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제4조 1항. “.....양당사국은 위 소요시설 중 군인가족용 주택이 합의된 장소에 다음의 방식으로 공급되도록 주선하기로 합의한다. 가. 대한민국은 합중국 국방부가 용산기지 안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대체주택을 제공할 것이다. 나. 합중국은 그 밖의 모든 소요 주택을 합중국의 비용으로 임차 또는 리스할 것이다.....”

이행약정에도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⁶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9차 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이 한국 부담분과는 별도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수천억원 규모의 지휘통제정보체계(C4I) 구축에 쓰일 가능성도 높음.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나 C4I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위반이므로 이들 용도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함.

4) 감액분을 지급하지 말아야

8차 협정 기간 중 협정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액(감액분)이 발생한 것은 미국이 정상적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미측의 책임임.

감액분 지급은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8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음. 그런데 정부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따라서 국회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함으로써 정부가 이에 대해 미측과 다시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0)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행약정 2항 다. 군수비용 분담.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로 지급된다. 한국 국방부는 군수비용 분담 프로그램에 의거 군수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탄약의 저장 및 정비, 수송, 장비의 수리 및 정비, 철도차량을 포함한 비전술차량, 가족주택을 제외한 합의된 특정 임대료, 주한 미군시설의 유지비용과 같은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5) LPP 전용을 위해 축적된 방위비분담금과 이자소득을 환수하거나 9차 협정에 우선 반영해야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부당한 운용과정에서 감액분 외에도 5천억원이 넘는 이월액, 불용액,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

국회는 2014년 예산안 심사 때 “정부는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내용에 분담금 미사용액의 우선집행 및 차년도 예산편성시 미사용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음. 그러나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이 같은 국회의 합리적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했음.

따라서 국회는 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를 부결시킴으로써 정부가 이 자금을 환수하거나 협정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미측과 다시 협상할 수 있게 해야 함.

6)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3년간 임금동결에 대량감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용안정 보장, 임금 인상, 인건비 분야 철저 검토 및 노사정 협의 기구 구성, 고용조건에 대한 정부간 합의 등을 요구하고 있음.

9차 협정에 딸린 ‘제도개선 교환각서’에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규정이 있음. 이 같은 규정은 선언적이고 피상적인 것이어서 주한미군노조의 핵심적 요구와 거리가 멀.

방위비분담금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운용을 근절하고 주한미군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7) 협정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해야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합의한 것은 미측의 방위비분담금 전용 등의 전횡을 계속 허용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재정주권을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협정 기간을 1년으로 다시 할 수 있도록 국회는 협정안에 대한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함.

11. 한미SOFA에 위배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로 나아가야

- 1) 우리는 미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50% 부담 요구를 초과하여 이미 65% 이상을 부담⁶¹⁾

< 표 8 >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한`미 간 부담 비율(2010년 기준)

	계	내역	출처
미국 정부 부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7억7330만달러 (34.9%) (8939억원)	- 운영유지비:6억4680만달러 - 가족주택운영비:3930만달러 - 가족주택건설비:440만달러 - 군사건설비:8280만달러	미 국방예산 2012회계연도 운영유지비 총람(2011. 2.) ⁶²⁾
한국 정부 부담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	14억4489만달러 (65.1%) (1조6749억원)	- 직접지원비:8561억원 (미군주둔비부담금 7904억원 등) - 간접지원비:8188억원 (토지임대료 평가 5648억원 등)	한국 국방부의 국회 보고자료 (박주선의원실 제공)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총계	22억1819만달러 (100%) (2조5688억원)		
비고	국가통계포털 2010년 평균환율 1달러당 1156원		

61) 자세한 내용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50% 부담’ 요구의 허구성”, 2013. 6. 19. 참조. http://www.spark946.org/renew/prog/bbs/board.php?bo_table=open_content&wr_id=44

62)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COMPTROLLER), 『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 FISCAL YEAR 2012 BUDGET ESTIMATES』, February 2011, p.208.

미국은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NPSC) 개념에 의거하여 한국의 부담이 42% 또는 40~45%에 불과하여 불공평하다면서 한국에 대해 50:50 부담을 요구해왔음.

그러나 한국 부담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미군주둔비부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직·간접지원비는 사실상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당함.

한미당국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우리는 이미 NPSC의 65.1%의 부담을 하고 있음.

저평가·누락분까지 따지면 한국의 비인적 주둔비부담 비율은 최소 70%를 넘음.

2) 방위비분담금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돼

1991~2013년 사이에 우리 국방비는 7조4524억원에서 34조6351억원(일반회계)으로 4.6배 늘어난데 비해 방위비분담금은 1073억원에서 8695억원으로 8.1배 상승하였음.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서 2.5%로 2배 가까이 늘어났음. 이는 주한미군주둔비 부담이 국방비 증액을 이끈 주요 요인의 하나임을 말해줌.

뿐만 아니라 현재 한미당국이 축적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잔액이 1조3천억원이 넘고, 미군이 축적한 자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도 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방위비분담금이 남아도는데도 우리는 향후 5년간에 걸쳐 5조원에 가까운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해야 함.

3)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부당한 집행

미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 발행한 「동맹국의 미군 지원비와 미국의 비용에 관한 조사 보고서」⁶³⁾에서 한국 등의 군사 건설 프로젝트가 적절한 감독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기여는 1천40만 달러(116억4280만원, 1달러당 1119원)에 달하는 평택 캠프 험프리에 주둔하는 미2사단을 위한 박물관이나 140만 달러(15억6660만원)에 달하는 용산미군기지를 위한 식당시설과 같은 의심스러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공돈(free money)”으로 간주된다고 밝히고 있음. 평택 미군기지에 50억 원짜리 제과 제빵공장을 신축하려다가 미 의회의 제지로 중단되기도 하였음.

보고서는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이런 낭비적인 사업이 아닌 꼭 필요한 사업에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써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미 의회는 한국이 지불하는 자금의 사용에 대해서조차 자국 납세자의 부담을 걱정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돈이라며 우리 국민 혈세의 집행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한미 간 군수분야 시행합의서’에 따라 한국 업체가 맡게 돼있는 군수지원 업무를 미국회사 ‘록히드 마틴’의 자회사 ‘PAE Korea’에 맡겨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06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사례도 있음.⁶⁴⁾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 11억 원을 영리 목적의 미군기지 내 드래곤힐 호텔 종업원 인건비로 불법적으로 돌려쓰다가 적발된 사실이 2008년 2월 ‘미국 국방부 감찰관 보고서’에서 확인된 바도 있음.⁶⁵⁾

뿐만 아니라 한국 국방부조차 2012년에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월액)

63) 「INQUIRY INTO U.S. COSTS AND ALLIED CONTRIBUTIONS TO SUPPORT THE U.S. MILITARY PRESENCE OVERSEAS」, 2013. 4. 15, p. 23~24.

64) 박기학, 우리 돈으로 선심쓰는 미군, 뻔뻔하다 [방위비분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②] 방위비분담 왜 문제인가?, 오마이뉴스, 2013. 6. 19.

65)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영내 호텔 인건비로 사용”, 경향신문, 2011. 10. 11

중 16억8백만원을 남수단 파병비로 전용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음.⁶⁶⁾

이는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이 전혀 통제되지 않은 채 주한미군과 한국정부에 의해 제멋대로 흥청망청 쓰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임.

4) 방위비분담금은 자주적 방위력 건설을 저해

우리는 방위비분담금만 하더라도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2년간 무려 10조4184억 원을 부담하였음. 이는 주한미군의 장비가치 92억 달러⁶⁷⁾(10조1936억 원, 2011년 평균환율 적용)를 넘는 금액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한미군에 대해 방위비분담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직간접지원(미군기지 무상 임대, 카투사 지원 등)을 하고 있음.

만약 방위비분담금을 한국군 전력강화에 투자했다면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상응하는 장비를 우리가 모두 갖추 수 있었을 것임. 방위비분담금은 자주적 방위력을 갉아먹은 반면, 한국 국방의 미국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가 된 것임.

5) 방위비분담 협정 자체가 SOFA에 위배되는 불법

한미SOFA 제5조는 한국이 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2항)하는 대신, 미국은 모든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1항)하고 있음. 이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을 주둔국(한국)과 파견국(미국)이 나눴

66) “국방부, ‘남아도는’ 미군 방위비분담금 남수단 파병에 전용”, 민중의소리, 2013. 8. 19

67) 권현철,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비용 추정”, 「국방연구」 제54권 제2호(2011년 8월)

으로써 부담의 균형을 기하자는 취지임.

그런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감축 압력⁶⁸⁾ 등으로 한미SOFA 제5조 1항을 정지시키고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한 ‘특별 조치’ 협정임. 그러나 8차 특별협정 전문을 보면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하고 상호적인 의지라는 목표를 인식하면서”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론적인 언급이 있을 뿐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미소과5조의 효력을 정지시킬 정도의 특별한 조치가 인정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 또는 근거가 없는 것임.

이처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미국의 강압에 의해 ‘시설과 구역’ 제공 이외에 미군의 주둔경비에 대해서도 한국이 상당부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한미소과 5조의 취지에 역행하여 한국(주둔국)의 부담을 더욱 늘리는 불법적이고 불평등한 협정임.

6) 신속기동군으로 바뀐 주한미군을 위해 시설과 구역 무상제공뿐만 아니라 주둔 경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부당

우리가 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막아준다는 명분 때문(한미상호방위조약)임.

그런데 현재의 주한미군은 더 이상 대북 방어 임무만 담당하는 불박이 군대가 아니라 이라크 등 분쟁지역에 파견되는 신속기동군(‘전략적 유연성’)으로 바뀌었음. 이는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 임무에 더 이상 얼마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한미당국이 스스로 인정한 것임.

68) “당시 한국의 협상 실무진의 증언과 관련 문건을 종합해 보면 한국이 결국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을 개시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주한미군 감축압력이었다.”(남창희,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체계의 연구 : 현지 고용원 인건비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2호, 2002.12, 91쪽)

따라서 대북 방어 임무, 즉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임무를 벗어난 주한미군을 위해 기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임.

7) 한국을 봉으로 여기는 미2사단 한강 이북 잔류 추진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강 이북, 우리가 '1구역'이라고 칭하는 구역에 작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미군이) 잔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연합뉴스, 2013. 11. 25)고 밝힘.

우리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통해 10조원이 넘는 미군기지이전비용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협정을 위배하여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미국이 부담해야 할 미군기지이전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주민들의 커다란 희생과 막대한 국민혈세 투입 속에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후반부에 이른 시점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미2사단 일부의 한강 이북 잔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미군기지이전사업의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와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임. 특히 주한미군기지로 인해 주거권과 환경권, 개발권에 제약을 받아오면서 미군기지 반환을 학수고대해 온 동두천 등 한강 이북지역 주민들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임. 우리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부인했지만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가 종료되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런 구상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시퀘스터(미 연방예산 자동삭감제도)에 따른 미지상군 감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음.

이처럼 미국이 우리를 봉으로 여기면서 한미 간에 협정을 맺고 국회 비준동의까지 받은 사안을 제멋대로 손바닥 뒤집듯 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유지'강화라는 이름으로 방위비분담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8) 패전국 일본보다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협정⁶⁹⁾

< 표 9 >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교

특별협정의 내용	 한국	 일본
미군주둔경비 지원 범위	포괄적으로 규정 :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부담(제1조)	관련 규정 없음
지원대상사업	인건비, 군사건설사업, 군수지원사업 등처럼 사업대상도 포괄적으로 규정됨(제1조)	인건비, 광열수도비, 훈련이전비와 같이 구체적으로 사업이 특정되어 있음
분담금 총액 규정	연도별 미군주둔비부담 총액이 정해져 있음(제2조)	일본 정부가 매회계연도마다 총액을 결정해 미국에 통보
다음연도 이월 문제	현물군사건설사업의 미집행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제3조)	관련 규정 없음

© 오마이뉴스 고정미

전 세계에서 특별협정(SMA)을 통해 미군주둔경비를 부담하는 나라는 한국과 패전국 일본 밖에 없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훨씬 불평등한 협정을 맺고 있음.

'주한미군주둔비 부담 특별협정' 제1조는 "대한민국은……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라고 하여 한국이 지원하는 미군주둔

69) 자세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한국이 태평양 미군운영비까지 부담?" 2013. 6. 26 참조

비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이런 조항 자체가 없음.

우리의 경우, 지원 항목이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의 3가지로 되어 있는데 군사건설이나 군수지원비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임. 반면 일본의 경우 제1조(인건비), 제2조(광열수도비), 제3조(훈련이전비)처럼 각각 구체적인 지원항목을 적시하고 있음. 즉,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이 가령 군사 건설 사업을 이것저것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협정 이외에는 다른 어떤 사업도 추진할 수 없게 되어있음.

우리의 경우, 한국이 미국에 지급할 미군주둔비부담금의 총액을 연도별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은 일본의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제1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담하는 경비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고, 해당 결정을 미국에 대해 신속히 통보한다"(제5조)라고 규정하여 지원 금액 총액의 결정권한이 일본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미군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이월시킨다거나 축적한다거나 전용하는 등 집행을 불투명하게 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음.

또 한국은 일본과 달리 카투사(2012년 3400명)나 한국노무단(2012년 2000여 명이며 한미소파가 아닌 전시협정 성격의 한국노무단지위협정의 적용을 받는 한국인 근로자)과 같은, 사실상 미군을 직접 대체하는 인력지원을 하고 있음.

9)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조속히 폐기해야

이처럼 우리나라가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불법적이고 부당함. 따라서 미국의 강요에 따라 한미SOFA를 정지시키고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협정으로 시작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조

속히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정부와 국회는 방위비 분담협정을 조속히 종료시켜야 함.

참 고 자 료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의안 번호	9298
----------	------

제출연월일 : 2014. 2. 7.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동맹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협정 주요내용(전문 및 본문 7개조로 구성)

가.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원분은 인건비 부담, 군수비용 부담,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 항

목으로 구성되며, 이와 관련하여 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를 채택함(협정 제1조).

나. 2014년 지원분은 9,200억원이며, 2015년 이후는 전년도 지원분에 전년도 물가 상승률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하되, 물가 상승률은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협정 제2조).

다. 인건비 분담은 현금 지원,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지원,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구성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를 채택함(협정 제3조).

참고사항

가. 입법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예산조치 : 국방예산에 반영 추진

다. 협정 체결경위

- 2013. 7. 2. ~ 2014. 1. 11. 제1차 ~ 제10차 고위급 협의
- 2014. 1. 11. 문안 합의
- 2014. 2. 2. 서명 (서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에 정부가 비준하도록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붙임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이후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 지위협정”이라 한다) 중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제5조와 관련하여,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하고 상호적인 의지라는 목표를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를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협정의 이행은 당사자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에 따른다.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가 채택되어 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한다.

제2조

이 협정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을 결정한다. 2014년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9,200억원이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 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되며, 2015년 지원분은 2013년도 물가 상승률을, 2016년 지원분은 2014년도 물가 상승률을, 2017년 지원분은 2015년도 물가 상승률을, 2018년 지원분은 2016년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다만, 모든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물가 상승률은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인건비 분담은 현금 지원이며,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지원이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가 채택되어 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한다. 연도 말에 미집행 현물 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이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미집행 지원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각 연도의 인건비 분담금은 3회 균등 분할하여 해당 연도의 4월 1일이나 그 이전, 6월 1일이나 그 이전, 그리고 8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지급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금 지원분은 각 사업 연도의 3월 1일에 지급된다.

제4조

현물 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납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 지불은 비용 분담 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제5조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하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하에서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 연도에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 지원 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당사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자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고 수정될 수 있다. 그러한 수정은 제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2월 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have agreed to take the follow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igned at Seoul on July 9, 1966, as amended, which sets forth the principles on the sharing of expenditures incident to the maintenance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recognition of the goal of a strong and mutual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alliance.

Article I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ar, for the duration of this Agreement, as a special measure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a part of the expenditures associated with the stationing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ategorized into Labor Cost Sharing, Logistics Cost Sharing, and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ROKFC).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a separate implementation arrangement between the concerned authorities of the Parties.

The Parties shall put in utmost efforts to enhanc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f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n this regard, the Exchange of Notes on System

Improvements shall be adopted and enter into force at the same date as this Agreement.

Article II

This Agreement shall determine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2014 through 2018.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2014 is 920 billion Korean Won. The 2015 through 2018 contributions shall be determined by increasing the contribution of the previous year by the inflation rate (Consumer Price Index) published by Statistics Korea using the 2013 rate for the 2015 contribution, the 2014 rate for 2016, the 2015 rate for 2017, and the 2016 rate for 2018. Further, the inflation rate used for any given year shall not exceed four percent.

Article III

The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shall consist of cash support and the Logistics Cost Sharing contributions shall consist of in-kind support.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shall consist of cash contributions and in-kind contributions. In this regard, the Exchange of Notes on ROKFC Implementation Principles shall be adopted and enter into force on the same date as this Agreement. If unexecuted in-kind contributions remain at the end of the year, those contributions shall roll over to the next year. The concerned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put in their utmost efforts to minimize unexecuted contributions.

Each year's Labor Cost Sharing payments shall be made in three equal payments on or before April 1, June 1, and August 1 of that year. ROKFC cash contributions shall be paid on March 1 of each program year.

Article IV

All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and services provided as part of the in-kind contribution shall be exempt from Republic of Korea taxes, or provided on an after-tax basis. Such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and services procur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exempt from individual consumption taxes and value added taxes. In the case of value added taxes, the zero rate shall be applied. If taxes are levied against any such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or services, payment of such taxes shall not be made from cost-sharing funding.

Article V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date of the exchange of written notifications by the Parties that their respective domestic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eted, and shall remain in force until December 31, 2018.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carrying out of any Logistics Cost Sharing contributions or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projects which are selected every year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procedures under this Agreement, and not fully executed as of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VI

The Parties may consult on all matters regarding this Agreement through the Joint Committee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Article XXVIII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or through the Joint Cost-Sharing Committee, which is composed of representatives appointed by the Parties.

Article VII

This Agreement may be revised and amended by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Such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pursuant to the process provided in Article V.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for the purpose,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Seoul this 2nd day of February 2014, in duplicate,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제정수반요인

○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고용원의 인건비와 여타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 대상기간 : 2014년~2018년(5년간)
- 전액 원화 집행
- 2014년 지원분 : 9,200억원
- 2015년~2018년 지원분 :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 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 (적용하는 물가상승률의 상한은 4%)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2014년	2015년	2016~2018년
지출	총 3개 항목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920,000	920,000 + (920,000 × 1.3%) = 931,960	전년도 지원분 + (전년도 지원분 × 전전년도 물가상승률)
	소 계 (a)	920,000	931,960	미정
수입	-	-	-	-
	소 계 (b)	-	-	-
□ 총 비용(a-b)		920,000	931,960	미정

* 매년 분담 항목별 배정액은 양국 국방당국간 협의를 통해 전년도 8월말에 결정

4. 부대의견

o 해당사항 없음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지출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2018년	계
총 액	9,200	9,319.6	전년도 지원분 + (전년도 지원분 × 전전년도 물가상승률)	미정
총 3개 항목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9,200	9,319.6	〃	미정

o 분담 항목별 세부 내용

- 인건비 :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총액 중 75% 범위 내에서 지원*

* 한·미 양국은 본 협정문 발효 뒤 한·미 군당국간 체결 예정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상 인건비 중 우리측 지원 비율을 기존 71%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음.

- 군사건설 : 탄약고, 활주로 등 전투시설 및 군인 막사, 행정 시설, 환경 시설 등 非전투시설 건설 지원
- 군수지원 : 탄약 저장, 항공기 정비, 차량·장비 구입, 수송 지원 등 용역 및 물자 지원

2. 수업

o 해당사항 없음

3. 작성자

o 외교부 한미안보협력과 이광석 1등 서기관 (02-2100-7411)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

비준동의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연 도	2014	2015	2016~2018	합 계
☐ 중앙정부	9,200	9,319.6	전년도 지원분 + (전년도 지원분 × 전전년도 물가상승률)	미정
○ 일반회계	9,200	9,319.6	"	미정
☐ 지방자치단체	-	-	-	-
☐ 그 밖의 공공단체	-	-	-	-
☐ 민 간	-	-	-	-
☐ 합 계	9,200	9,319.6	전년도 지원분 + (전년도 지원분 × 전전년도 물가상승률)	미정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방예산에 반영 추진

3.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협의사항

- 관련 정부 부처간 협의 및 정부예산안의 국회 승인

5. 작성자

- 외교부 한미안보협력과 이광석 1등 서기관 (02-2100-7411)